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8월  
석사학위논문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염성보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hina's Countermeasures for  
Non-Tariff Barriers

2012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염성보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 연구

지도교수 박 노 경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염 성 보

# 염성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제 홍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석 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노 경 (인)

2012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 목 차 】

## ABSTRACT

|                           |    |
|---------------------------|----|
| 제1장 서 론 .....             | 1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1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2  |
| <br>                      |    |
| 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유형 .....   | 4  |
| 제1절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   | 4  |
|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유형 .....    | 4  |
| 2. 비관세장벽의 특징 .....        | 7  |
| 제2절 무역상 기술장벽(TBT) .....   | 9  |
| 1. TBT협정의 배경 및 목적 .....   | 9  |
| 2. TBT협정의 주요 내용 .....     | 12 |
| 3. TBT협정 운용현황 분석 .....    | 17 |
| 제3절 환경무역장벽 .....          | 24 |
| 1. 환경과 무역과의 관계 .....      | 24 |
| 2. 환경규제의 유형 .....         | 26 |
| 2.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 32 |

|                               |    |
|-------------------------------|----|
| 제4절 녹색무역장벽                    | 35 |
| 1. 녹색무역장벽의 개념과 특징             | 35 |
| 2. 녹색무역장벽의 운용현황 분석            | 38 |
| <br>                          |    |
| 제3장 비관세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 41 |
| 제1절 비관세무역규제의 對중국 집중 원인        | 41 |
| 1. 외부적 원인                     | 41 |
| 2. 내부적 원인                     | 43 |
| 제2절 중국무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 47 |
| 1. 강제적 기술규정 및 표준의 실시에 따른 영향   | 47 |
| 2. 환경기술표준 요구 부합에 따른 영향        | 48 |
| 3. 수입국의 불합리적인 규정 혹은 표준에 따른 영향 | 49 |
| 제3절 중국무역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 50 |
| 1. 중국산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 50 |
| 2. 고용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의 심화        | 51 |
| 3. 수출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경쟁 심화        | 52 |
| <br>                          |    |
| 제4장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 53 |
| 제1절 총체적 대응방안                  | 53 |
| 1. 정확한 무역장벽의 인식과 적극적 대처       | 53 |
| 2. 국제무역마찰에 적극적 대응             | 55 |
| 3. 국제협력 및 현지생산 확대             | 56 |

|                                  |    |
|----------------------------------|----|
| 제2절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방안 ..... | 57 |
| 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              | 87 |
|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              | 61 |
| 제3절 환경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          | 64 |
| 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              | 64 |
|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              | 61 |
| 제4절 녹색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          | 67 |
| 1. 녹색산업 및 제품구조 조정 .....          | 67 |
| 2. 환경표지인증제도의 보완 .....            | 68 |
| 3. 녹색장벽 경보시스템 구축 .....           | 71 |
| <br>                             |    |
| 제5장 결 론 .....                    | 72 |
| 참고문헌 .....                       | 74 |



## 【표 목 차】

|                           |    |
|---------------------------|----|
| <표 2-1> 주요 국제환경협약 .....   | 29 |
| <표 2-2>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 ..... | 31 |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UNCTAD의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     | 5  |
| <그림 2-2> 연도별 기술규제 통보문 현황 및 국가분류 ..... | 18 |
| <그림 2-3> 전 세계 녹색무역장벽의 운용 추세 .....     | 38 |
| <그림 2-4> 주요 국가별 녹색무역장벽의 운용 추세 .....   | 39 |

# A Study on the China's Countermeasures for Non-Tariff Barriers

Yan, Cheng-Bao

Advisor : Prof. Park, Ro-Kyung,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1990s, together with the demand of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the increasing trend of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is very clear: first, the emphasis of trade(TBT) barriers has transferred from tariff to non-tariff; and then the technical barriers attract the attentions. The traditional tariff has been dropped gradually. Non-tariff measures, such as net export quota, system of the licence, exchange control, etc. are restrained from and limited with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technical standard, evaluate and the environment barrier. More and more fields have been involved and the range involved has become wider and wider.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have become the most advanced from and the main measure of trade protectionism.

The content of this text is mainly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There is a theory of WTO's regulation on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in the first part. And then it explains the circumstance about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 and the relative effect on China have been banned by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through a large number of

facts and relevant data; and analyzes the reason why export products of China encounter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 in the second part. Finally, it international trade barrier in china: how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take measures to help export products of China to break through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 in the third part.

With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China has become under the condition of foreign trade-depending. Because of the lower product technology and the inferior export construction, the export production of China often has been banned by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BT, the environment barrier which gives great impact to China. As developing countries, China is in inferior status all over the world in the face of the technological barrier, the environment barrier. Nowadays, TBT and the environment barrier is the serious challenge beyond Anti-dumping that China has to confront.

This test is analysing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of export products of China dialectically to positive impact and foundation of negative influence of export product trade of China. Recently, export products of China have constantly met with the foreign technological barrier,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The export has been obstructed and suffer heavy losses.

Therefore, how to breakthrough of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and make use of the rule of WTO, and establish effective protection measure for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are all the important factor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thesis. Face challenge, it is the need of clear and rational recognition. We can not regard that all the Technical Measures of Trade was established to prevent freedom from trade, through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development trend of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and realize that the trade

barrier still has positive function; also, we should acknowledge some developed countries and WTO's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 last but not least, only on the basis of probe into the reasons of impact on China's foreign trade, can we find a way out. At the present time, government direct-management should be a practical solution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 such as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 The government should help enterprises to cross over and break up various kinds of the trade barriers. Of course, at the same time, the creative qualities and technical level should be developed in great efforts in China.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결 이후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을 거치면서 국가간 자유무역의 장애물이었던 관세는 크게 낮아졌다.

특히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이었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의 공산품 관세율은 거의 0%에 접근했으며,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도 8%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국가간 무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환경 및 기술규제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비관세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최근 EU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유해물질 사용지침(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과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간 FTA협상이 활발해지면서, 협상의 주요 내용 중에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들이 점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09년 ‘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全球貿易摩擦研究報告)<sup>1)</sup>를 발표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4년 연속 전 세계에서 무역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며, 기술성 무역장벽은 중국의 수출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 장벽의

---

1)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직면한 무역마찰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무역구제·지식재산권·기술성 무역장벽 등 무역마찰의 특징과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하고, 무역마찰과 관련한 최신 통계와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형태 중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 등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장애요인을 뜻하며,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되어 있다.<sup>2)</sup>

또한 비관세 장벽은 그 연구 대상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무역환경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 세 부문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써 첫째, 현재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중국이 비관세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낸다.

둘째, 실제적인 자료와 무역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요 비관세무역장벽의 현황 및 비관세무역장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로, 이론과 현실의 연구를 결합해서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과 주요 유형으로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비관세장벽의 특징,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의 개념과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 비관세장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이 중국의 경제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

---

2) Deardorff, A. V. and R. M. Stern. 1998, *Measurement of Nontariff Barriers*,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다.

제4장에서는 비관세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2장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과 유형

### 제1절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유형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장애요인을 뜻하며,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되어 있다(Deardorff and Stern 1998). 또한 ‘수출 보조(Export Subsidies)’처럼 무역을 촉진하는 정책도 비관세장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무역을 왜곡하는 다양한 조치라고도 불린다.

한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즉 어떤 조치들이 비관세장벽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비관세조치(NTM: Non Tariff Measures)’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비관세조치’는 관세 이외의 형태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양이나 가격,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변화를 줌으로써 상품의 국제거래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조치를 의미한다.<sup>3)</sup>

이러한 ‘비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의 두 가지 개념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지만, 비관세장벽을 비관세조치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sup>4)</sup>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 국가별 자료는 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TRAINS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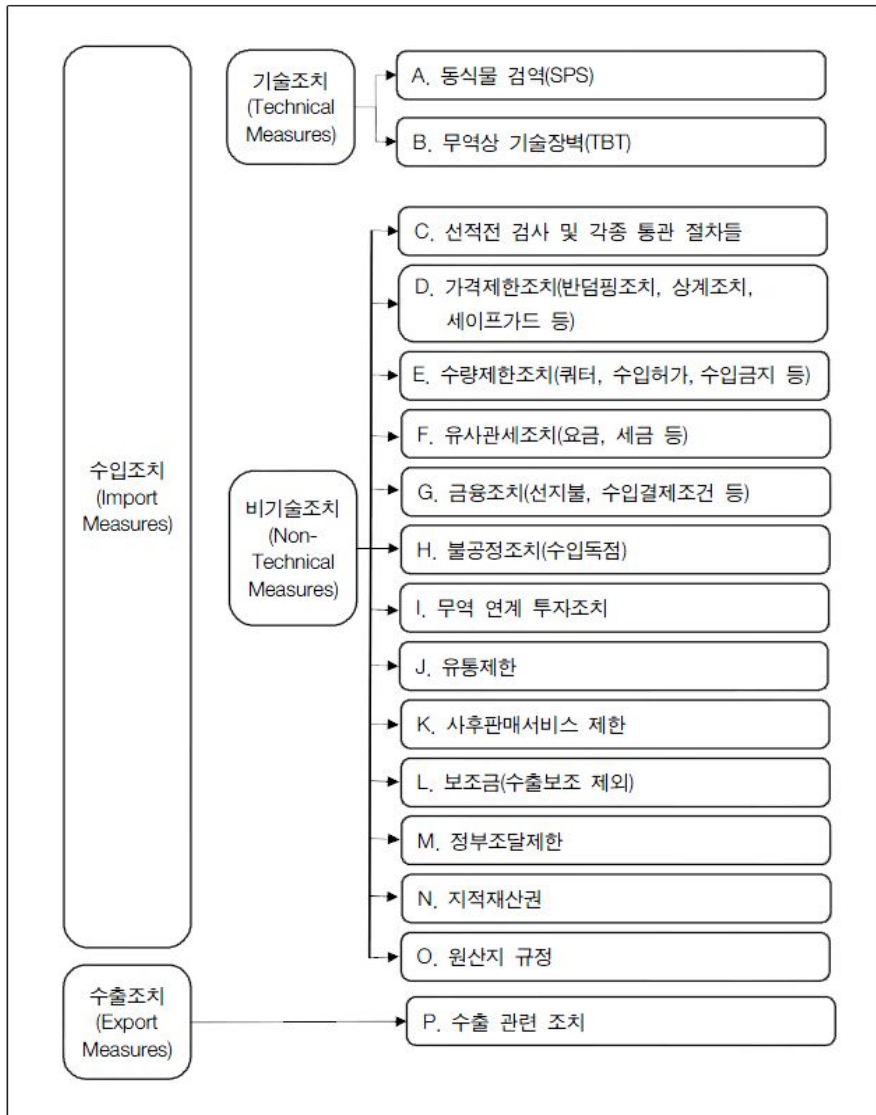
3) 2006년에 UNCTAD가 주축이 되어 비관세장벽의 ‘현자들 그룹(GNTBs: a Group of Eminent Persons on NTBs)’이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실무진(MAST: A Multi-Agency Support Team)’에 의해 2008년 정립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개념이다.

4) Kuwahara, Hiroaki, 2009, “Report on the Progress of UNCTAD-Led NTMs Work on Classification, Collection and Quantification of NTMs.” Paper Presented at the Research Workshop on Rising Non-Tariff Protectionism and Crisis Recovery, Macao, China, Dec. pp.14-15.



다. 2008년부터 UNCTAD에서는 다음 <그림 2-1>과 같이 비관세장벽을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한 후, 수입조치를 크게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로 구분하였다.

<그림 2-1> UNCTAD의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자료 : Kuwahara, Hiroaki(2009).

기술조치에는 SPS(동식물 검역)와 TBT(무역상 기술장벽)가 있으며, 비기술조치에는 선적전검사를 포함한 각종 통관 절차, 반덤핑과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와 같은 가격제한 조치, 쿼터나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각종 수수료 및 세금과 같은 유사관세 조치, 선지불 요구 및 수입결제 조건을 명시하는 금융조치, 수입독점과 같은 불공정조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을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를 제한, 일반적 수입보조, 정부조달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분류에 없었던 수출 관련 조치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수출보조 및 수출금지와 같은 조치도 무역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조치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대상은 모든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 중 선적전 검사 및 각종 절차, 가격 및 수량제한 조치, 유사관세 조치, 금융조치, 불공정조치, 무역과 연계된 투자 조치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UNCTAD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에 '절차상 장애요인(Procedural Obstacles)'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세관 공무원의 임의적인 행위 여부, 특정 무역업자를 선호하는 차별적인 행위, 비효율적이거나 월권을 통하여 무역을 방해하는 경우, 투명하지 못한 조치들, 법률적 애로사항, 비정상적인 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분류 및 조사항목 추가 내역을 볼 때, 전반적으로 UNCTAD는 비관세조치 중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협정(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대한 조사 비중을 늘렸으며, 향후 무역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지적재산권과 원산지 규정 등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인정하였고, 수입이외에도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를 포함하였다.

또한 실제 수출입을 수행하는 업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절차상 장애요인을 조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내용까지도 UNCTAD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TBT와 SPS에 대한 통보절차를 보다 효율화하는 것도 WTO에서 향후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5)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27.

## 2. 비관세장벽의 특징

비관세 장벽은 그 정의의 다양성만큼 여러 가지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비관세 장벽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적용이나 운영이 매우 복잡하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비관세 장벽은 법률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있는 반면 체계적인 조정 없이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조직 없이 개별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WTO 설립 이후 각국이 새로이 제정하는 기술장벽의 경우 WTO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 투명성이 개선되었으나, 여타 비관세 장벽의 경우 통보의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항상 상대국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수출자는 수시로 변하는 수입국의 무역정책을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완화 또는 철폐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WTO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합리적인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령, 국민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보호, 천연자원의 보존,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합리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기반을 둔 비관세장벽은 철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넷째, 비관세 장벽은 그 효과와 영향을 계량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과세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여러 학자들이 비관세 장벽의 계량화를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다섯째, 비관세 장벽은 차별적 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선진국이 개도국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많다. 기

---

6) 한승권, “우리나라 비관세 장벽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WTO/DDA 비관세 장벽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8-9.

술 우위에 있는 선진국이 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분야의 인증 기준을 높인다면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그 나라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때 인증 기준이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 제2절 무역상 기술장벽(TBT)

### 1. TBT협정의 배경 및 목적

#### 가. TBT협정의 체결배경

GATT회원국들은 최혜국대우(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골자로 하여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목표로 관세율 인하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통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 결과 회원국들은 꾸준히 자국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왔고, 이로 인해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은 관세장벽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여왔다. 관세장벽의 축소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확대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기술발달로 인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질수록, 각 수출국에 대한 기술규제, 규격, 적합성평가 절차, 제품의 라벨링 등과 같은 업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비관세장벽의 일부로서, 즉 기술장벽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수출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기술장벽에 대한 GATT 1947은 제3조<sup>7)</sup>, 제11조<sup>8)</sup>, 제20조<sup>9)</sup>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을 뿐이었으며<sup>10)</sup>, GATT 조항에 따른 규율만으로는 이러한 기술 장벽들을 모두 규제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자간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기술장벽이 규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무역 제한적 요소의 완화노력으로 몇 년간의 형상 끝에 1979년 등경라운드에서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하나로서, 32개국GATT 회원국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TBT)’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이후 Standard Code(이하 ‘표준협정’이라함)로 불리게 되었다. 표준협정에서

---

7) GATT 제 3조 National Treatment(내국인 대우)

8) GATT 제11조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9) GATT 제20조 General Eliminations(일반적 예외)

10) Alan O. Sykes, *Product Standards for Internationally Integrated Goods Market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95, p.64.

는 기술규제, 규격과 적합성평가 절차의 준비, 채택 적용 등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표준협정이 동경라운드의 다른 어떤 협정보다도 많은 국가가 서명하여,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표준협정은 114개 GATT회원국 중에 38개 회원국<sup>11)</sup>만이 가입한 복수국간 협정으로, 협정 참여 회원국들의 수가 사실상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관리와 집행이 중앙정부 이외의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관에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표준협정에서는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표준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가 모호하였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었다.

동경라운드에서 시작된 표준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TBT 협정으로 채택되어 WTO 협정의 주요 부분이 되었으며, 회원국의 의무적 가입대상인 다자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으로 강화되었다. TBT협정은 동경라운드의 표준협정을 대부분을 포함하였으며, 몇 가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였다. 또한, TBT 협정은 기존의 제품 그 자체에 관한 규제와 표준에만 적용되었던 표준협정과는 달리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등 최종제품이 만들어지는 방법에도 적용됨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표준협정 보다 훨씬 다양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TBT협정은 표준협정에 비해 그 적용대상 범위도 확대되어,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활동 그리고 자율적인 표준의 설명 및 적용에까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동경라운드의 표준협정은 농산물과 공산품을 통합하여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WTO 협정은 이를 분리하였다. 즉,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 농산물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은 새로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혹은, SPS협정, 이하 ‘SPS 협정’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는 TBT 협정과 분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품규격의 표준화는 상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기술적 대화를 증대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기술반달의 심화는

---

11) 체결당시에 32개국 이었으나, 추후 몇 개국이 더 참여하게 되었다.

표준화 대상범위의 확대와 더욱 세분화된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화제도는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각국의 상이한 산업화 과정 및 발전 속도로 인해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가간의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기술성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 나. TBT협정의 주요목적

TBT협정의 가장 주된 목적은 국내 조치로서의 기술장벽의 설정을 통한 보호무역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표현하면, 국내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회원국의 주권 행사와 국제무역 공동체에서의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이자 목적이다.<sup>12)</sup>

WTO 회원국들은 정당한 목적<sup>13)</sup>을 위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주권을 TBT 협정의 전문 제6문이 확인하고 있다.<sup>14)</sup> 회원국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국가들의 조치가 보호주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각 국가의 규정간의 부조화, 기술규정/표준의 작은 차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T 시절에는 이러한 국가들의 조치를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만 규율하고 있었을 뿐, 기술장벽만을 다룬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사적행위자(private actors)들의 행위는 규율할 방법이 없었다. WTO의 출범과 함께 발효한 TBT 협정은 국가들이 정당

12) Koul, Guide to the WTO and GATT: Economics, Law and Politic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417.

13) TBT 협정 제2.2조는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환경보호 등을 예시하고 있다.

14) TBT 협정 자체에는 전문(Preamble)이라는 말이 나타나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관은 US-Shrimp, WT/DS58/AB/R 및 EC-Tariff Preferences, WT/DS246/AB/R에서 TBT 협정의 서문을 "전문"으로 지칭한 바 있다. 또한 서문의 문장들이 WTO 회원국들의 공동의 고려사항과 공통의 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TBT 협정의 목적과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전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olfrum, et al, WTO - Technical Barriers and SPS Measure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vol. 3,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2007 pp.168-169.

한 목적을 위해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며(제6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제5문)할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제3조를 통하여 비정부기관도 규율대상으로 포함시켜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국제규범과 다른 표준의 제정, 상품의 성능이 아닌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 표준의 제정, 국내상품과 수입상품간의 상이한 검사 및 인증시스템의 적용, 수입상품에 대해 수출국이 시행한 검사 및 인증 결과의 불인정, 투명성 부재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바 이들 문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무역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further the objectives of GATT 1994"라는 표현을 통해 제2문이 제시하는 GATT 1994와 TBT 협정의 공통의 목적, 즉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국제무역을 통해 회원국과 그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sup>15)</sup>

## 2. TBT협정의 주요 내용

### 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기술규정의 정의는 TBT협정의 부속서 1.1에서 내리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EC-Asbestos와 EC-Sardines에 대한 상소기관의 보고서는 부속서 1.1에서 제시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sup>16)</sup> 첫째, 문제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식별된 상품에 적용되는 문서

15) 이민아, "TBT협정과 환경라벨링 제도; WTO 주요 회원국들의 환경라벨링 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20-21.

16)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s 66-70; Appellate Body Report, EC-Sardines para 176.



는 상품의 특성을 한 가지 이상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문서에 나타나 있는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준수가 강제적이어야 한다. 이 논문의 관심사인 환경라벨링 중 그에 대한 준수가 강제적인 것은 기술규정에 해당된다.

기술규정은 제2문의 ‘이러한 목적’, 즉,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의 초래를 방지할 목적을 위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로는 ‘목적이 정당할 것’이고 둘째로는 기술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할 것’인데, 무엇이 정당한 목적인지는 제3문에 예시<sup>17)</sup>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불필요’한 장애를 구성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 필요(necessary)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직 TBT협정상의 ‘필요성’의 의미를 분석한 GATT/WTO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GATT 제XX조(b) 및 (d)<sup>18)</sup>의 ‘필요한’의 의미는 GATT의 여러 판례에서의 정의를 통해 확립되었다.

한편 TBT협정은 회원국들이 기술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규정과 표준을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조화시킬 것을 규정한다. 국가들의 일방적인 표준의 제정은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렇게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하여 조화가 이루어지면 국가마다 상이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의 국내 기술규정 및 표준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제무역을 크게 원활하게 해준다. 회원국들의 국내 기술규정 및 표준을 국제표준에 일치시키면 수출업자들이 서로 다른 수입시장의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간 및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

17) 제2.2조는 기술규정의 형태로 무역에 대한 장애물을 형성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3문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그리고 환경보호를 나열하고 있으나, 앞에 사용된 “inter alia”로부터 이 조항의 정당한 목적은 예시일 뿐 여기에 명시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Van den Bossche, p., “WTO Rule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aastricht Faculty of Law Working Paper, 2005/6, p.17.

18) GATT 1994 제20조(b)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이—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d)의 “통관의 시행, 제2조 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 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GATT 1994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일반적 예외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해준다.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TBT협정의 전문에도 표현되어있는데, 국제표준이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TBT협정이 말하는 ‘조화’는 무엇인가. 조화란, 기존에 국가들이 각자의 요건을 설정하던 동일 분야에 대해 여러 국가가 동일한 표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조화는, 완전히 새로운 표준의 제정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합리적인 표준의 구성 또는 채택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참가국의 표준을 채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조화는 TBT협정의 중심으로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i) 회원국의 TBT 조치의 기초로서 국제 표준의 사용 무역에 상당한, (ii)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의 정당화, (iii) 제2.5조 하의 입증 책임의 완화, 그리고 (iv)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참여 등이다.

## 나. 표준(Standard)

국내표준은 기술규정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나, 표준의 합치 여부는 시장 접근이 허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다. 표준의 정의는 부속서 1.2에서 내리고 있다: “규격,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정의에 따르면 기술규정과 달리 표준은 그에 대한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다. 기술규정과 마찬가지로 표준의 정의는 명시적으로 라벨링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라벨링 중 자발적라벨링은 표준의 정의에 포함된다. 표준은 비록 강제적이지 않으나 사실상(de facto) 많은 경우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규율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적 기업에 의해서도 채택 및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규정의 조항들을 그대로 표준에 적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제4조와 부속서3의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 관행규약(이하 모범관행규약이라고 한다)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규율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부속서3은 여러 면에서 기술규정 관련 TBT협정의 규정들을 반복하건 그에 비추어 표준기관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틀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제4조는 WTO 회원국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자국 영토에서 모범관행규약을 이행할지를 제시한다.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TBT협정 제4조는 제1항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동 협정의 부속서3으로 마련된 모범관행규약에 따른 의무를 부여한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앙 정부<sup>19)</sup> 표준화 기구가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하고 준수할 것을 보장하며, 자국 영토 내의 지방정부와 비정부 표준기관 그리고 지역 표준기구가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하고 준수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

자발적라벨링에 적용될 수 있는 TBT협정상의 의무는 대부분 모범관행규약에 포함되어있다. 자발적 환경라벨링이 모범관행규약의 적용을 받을지는 그 제도를 적용하는 기관이 모범관행규약의 의미상 표준기관인지 그리고 표준기관이 규약을 수락하였는지에 달려있다. 우선, 부속서3.B는 중앙 정부기관, 지방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 기관을 불문하고 WTO 회원국의 영토 안에 있는 표준기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이 WTO회원인 정부 지역표준기관, 그리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회원이 WTO 회원국의 영토 안에 존재하는 경우의

모든 비정부 지역 표준기관을 ‘표준기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정의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부속서1의 ‘중앙 정부기관’, ‘지방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 ISO/IEC Guide 2<sup>20)</sup>의 ‘기관’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TBT협정에서 제시하는 정의는 매우 넓고, 이 기관들이 부속서1.2(표준의 정의)에서 표준을 승인하는 ‘인정된 기관’이라면, 이 기관들이 승인하는 수많은 문서에 포함되는 다수의 자발적 환경라벨링은 동 규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4조에서 회원국들의 중앙정부

---

19) TBT협정 부속서1.6 중앙 정부기관: 중앙 정부, 그 부처 또는 당해 활동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20) ISO/IEC Guide 2: General Terms and Their Definitions Concerning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1991).

표준기관은 규약을 수락하고 준수해야 하므로 국가 표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자발적라벨링 제도들은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기타 정부 부처의 표준의 적용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기관의 행위가 되므로<sup>91)</sup> 그 부처가 집행하는 자발적 환경라벨링도 규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모범관행규약은 중앙정부기관이 승인하는 자발적 환경라벨링을 대체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지방 및 비정부 표준기관은 반드시 모범관행규약 상의 의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운영하는 자발적 환경라벨링 제도는 사안별로 규약의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4.1조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중앙 정부기관은 지방 및 비정부 표준기관들이 규약을 수락하고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들 표준기관이 운영하는 자발적 환경라벨링 역시 대부분 모범관행규약 상의 의무의 적용을 받고 그에 합치할 것이 예상된다. 즉, 결론적으로는 자발적 환경라벨링은 그것이 정부주도로 이행되어지든 민간 주도로 이행되어지든 모두 모범관행규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하는 표준기관은 D항부터 Q항까지의 의무를 진다. 그중에서 특히 D항은 WTO 회원국의 표준기관이 표준을 준비, 채택 및 적용을 할 때 WTO 회원국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상품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의 동종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국의 동종 상품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의 동종상품”이라고 함으로써 국내생산이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표준이 채택,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외국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표준은 모범관행규약상의 제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D항은 기술규정에 적용되는 제2.1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E항은 기술규정과 마찬가지로 표준 역시 필요성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F항은 제2.4조와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써 국제표준에 입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화를 위한 규정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모범관행규약 G항부터 P항까지에 나타나있다. 이 조항들은 기술규정의 조항들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특히 필요성 요건 및 국제표준 조화

의 예외와 관련하여 차이점을 보인다.

#### 다. 적합판정절차

기술규정과 표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들은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하는 적합판정절차는 특히 ‘표본 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 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TBT 제도는 그것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의 부합여부를 검증 또는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한 적합판정절차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TBT협정이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적합판정절차가 기술규정과 표준에 더하여 세 번째의 무역 기술장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출국에서 이미 한 차례 기술규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판정이 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주무당국이 자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외국 상품이 자국의 표준과 합치하는지를 재차 확인하려고 들 경우, 중복되는 판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관련 상품이 수입국의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이 된다.

이러한 무역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TBT협정은 제5조 및 제7조, 8조를 규정하여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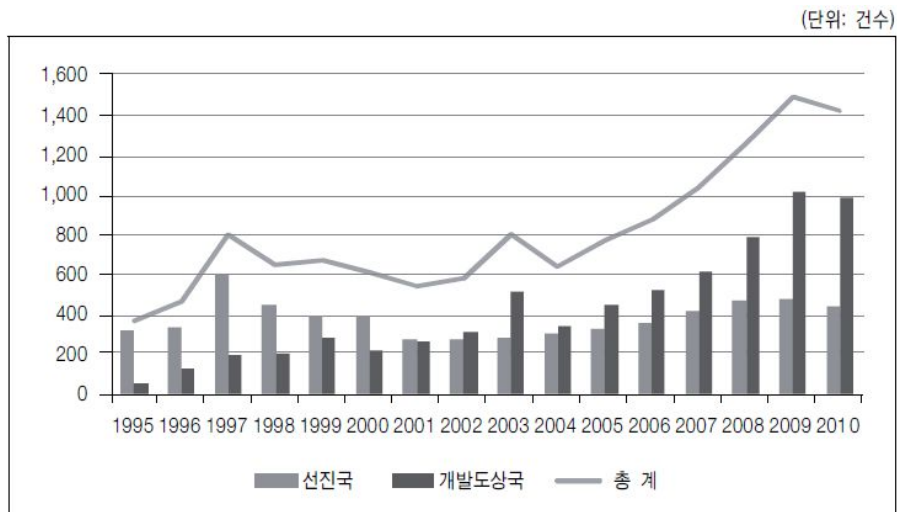
### 3. TBT협정 운용현황 분석

####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WTO 회원국은 TBT 협정문 제10조 6항에 의해 신규 기술규제가 제정되거나 기존의 기술규제가 개정될 때 이를 TBT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TBT 협정문 제2조 9항에는 제·개정된 기술규제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WTO TBT 위원회에 통보문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만 2,935건의 기술규제가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1995년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최고치인 1,490건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20건을 기록하였으나,<sup>21)</sup> 2006년의 875건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1997년, 2003년, 2009년에는 모두 전년대비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 배경과 세계 경기침체가 무언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2> 연도별 기술규제 통보문 현황 및 국가분류



자료 : 장용준 외,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33.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선진국이 31%, 개도국이 69%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통보문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당시 선진국 비중은 87%, 개도국 비중은 13%로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선진국의 통보 건수는 점차 감소한 반면 개도국의 통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21) 2010년의 감소현상에 대해 기술규제 도입 건수 감소보다는 WTO TBT 협정 제5.6조에 근거하여 각국이 통보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WTO TBT 협정 제 5.6조는 도입되는 기술규제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를보였다. 2001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 비중이 거의 같아졌으며 이후 개도국의 통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진국의 통보 건수를 상회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통보문 건수 비중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져, 2010년에는 비중 기준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나. 국가별 TBT 통보건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BT 통보 건수에서는 중국이 총 600건으로 다 통보 건수를 기록하였고 미국 438건, 이스라엘 356건, EU 255건 등이 뒤를 잇는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TBT 통보 건수가 64건에서 201건으로 급증하였으나 2010년에는 통보 건수가 60건으로 대폭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WTO 하에서 집계를 시작한 1995~2010년 기간의 누적 통보 건수에서 중국은 총 763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WTO 가입이 2001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누적 건수에서도 중국의 TBT 통보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총 통보 건수에서 2006년 이후의 통보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높아 최근에 신규 기술규제의 도입 및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WTO 의무 이행 및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에 대한 조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기술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중국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2009년 201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60건으로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 계속 추진되었던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규제 제·개정 작업이 2010년도에 들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또한 WTO TBT 협정문 제 5.6조에 의거 신규 기술규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명시적 통계를 줄이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와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sup>22)</sup> 역시 통보문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간다는 2010년 통보 건수가 139건으로 가장 높았고,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

비아, 오만 등 걸프지역 국가들의 경우 2006년 이후의 통보 건수 비중이 각각 98.2%, 98.1%, 100%, 94.3%로 매우 높다. 이는 최근 걸프표준(GSO: Gulf Standard Organisation)을 채택하기 위해 기술규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기술규제 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도 GCC 회원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006~10년 TBT 통보 건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개도국의 통보 건수 증가를 들 수 있다. 2006~10년 기간의 일본이나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진국의 통보 건수는 총 누적 건수의 30%대에 불과하며, 미국만이 54.6%를 기록하여 동기간 통보 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 케냐,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2006~10년 통보 건수가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근 TBT 통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경우 2006~10년 TBT 통보 건수는 총 201건으로 동기간 통보건수 기준으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10년 5년간의 통보 건수는 이전 10년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 통보 건수의 51.1%를 차지하여 한국도 최근 TBT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06년 29건이었던 TBT 통보 건수는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37건과 3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57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산업별 TBT 통보건수

2006~10년의 WTO TBT 통보문을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전기기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무/화학이 279건, 일반기계가 265건, 가공1차산품이 264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기기계의 통보문 건수는 1999년부터 증가 추세로 2009년에 10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9건으로 감소하였다. 2006~10년 전기기계의 통보 건수는 전체 전기기계 통보 건수의 59.4%로 최근 5년간 통보 건수가 급증하였다. 동기간 동안 전기기계 관련 통보문 중 안전

---

22)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UAE.



에 대한 통보가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과 통신 및 무선통신이 각각 24.0%, 14.6%를 점하고 있다.

고무/화학의 경우 2004년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05년부터는 일정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2010년 통보 건수는 60건에 이른다. 2006~10년 동안 고무화학에서는 인간의 건강, 환경보호, 안전에 대한 통보 건수가 비슷한 비중으로 전체 통보 건수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기계의 통보 건수는 2002년 이후부터 증가하다 2009년 8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57건으로 감소하였다. 2006~10년 통보문은 안전에 대한 통보문이 49.8%, 환경보호에 대한 통보문이 41.9%로 전체의 91.7%에 이른다.

가공1차산품의 통보문은 2001년에 급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09년에 7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55건으로 감소하였다. 2006~10년 동안 가공1차산품의 통보문 중 식품 기준이 61.0%, 라벨링이 1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식품 기준에 대한 통보문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기기계, 고무/화학, 일반기계 부문의 통보문 건수가 많은 것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일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규격화·표준화 작업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통보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가공1차산품의 경우 자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상 전통적으로 통보 건수가 높은 산업 중 하나이다.

##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2006~10년의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를 위한 규제가 총 3,725건으로 전체 통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에 대한 통보건수를 살펴보면 2006~07년에 비해 가장 최근에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과 2010년에도 여전히 전체 통보 건수에서 각각 45.8%와 4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가 2006~10년 총

통보 건수의 14.6%를 차지하였고, 환경보호(8.7%), 품질요건(7.5%), 새로운 국제법규 및 기술의 채택(5.3%) 등이 총 보고건수 대비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무역원활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가안보요건 및 명시되지 않음은 2009년과 2010년에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2006~08년 사이 2~4건 정도 통보되던 것이 2009~10년에는 각각 24건, 88건으로 증가하였고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통보 건수도 통상 2~4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 34건, 2010년에 10건으로 증가하였다.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도 통보 건수 기준으로 약 1% 내외를 차지하면서 통상 10여 건이었으나 2009년과 2010년에 56건씩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통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5%와 2.9%로 증가하였다.

#### 마.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WTO 회원국은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sup>23)</sup>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이라고 한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TBT 통보문의 내용은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용이하나, 통보문 중에는 단순한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에 관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실제로 기술규제가 무역 상대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특정무역현안은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은 1995년 WTO 출범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까지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은 총

---

23) 연 3회(3월, 6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287건으로, 2002~05년에 다소 감소 추세이던 특정무역현안은 이후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총 7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총 61건의 특정무역현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신규로 제기된 현안뿐만 아니라 기존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현안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TBT위원회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당한 국가는 EU로 특정무역현안 제기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30건, 미국 28건, 한국 18건의 순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WTO 가입년도가 2001년임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제기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제기 건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EU에 대한 제기건수가 5건, 중국에 대한 제기건수가 4건이었다. 한편 한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의 총 건수는 20건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가 393건으로 상위 10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보면 특정무역현안 피제기 건수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 역시 EU로, 2010년까지 총 제기건수 136건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당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114건으로 EU와 함께 특정무역현안 제기 건수에 있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캐나다 46건, 일본 41건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상위 10위권 국가는 피제기 국가와 대체로 일치하나 EU,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 제3절 환경무역장벽

#### 1. 환경과 무역과의 관계

최근 세계경제가 단일화되면서 한 나라의 경제가 대외부문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정책이 각국의 국내경제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과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당국에 대단히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 세계적인 공업화에 따른 오염 증대로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겪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정치적 및 지리적 여건의 차이로 환경오염에 대한 억제노력도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과 환경보전의 두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상반된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옹호론자들은 CATT/WTO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의 확장을 주장한다. 그들은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삶의 토대를 손상시킨다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성장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서구경제발전모델의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장을 통해서만 지속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자원소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자유무역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국내경제의 보호와 환경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간에는 상반관계(trade off)가 존재한다. 환경규제조치는 환경비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내부화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오염배출을 줄이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의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국제무역에 있어 환경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생산자는 규제가 약한 국가의 생산자보다 경쟁력면에서 열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에 소극적인 국가와의 강력한 경쟁은 보다 깨끗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하여금 적절한 환경규제조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강

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오염집약적인 산업은 활성화되는, 반면 환경친화적인 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오염집약적 산업은 환경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옮겨 감으로써 산업공동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면 WTO 체제가 추구하는 국제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는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국가간의 환경규제 차이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는 합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환경규제가각국의 대외경쟁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또는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면 그와 같은 이유의 다자간 무역규제는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은 환경규제가 환경민감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환경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자극하여 경영성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4)</sup>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자국의 환경규제가 경쟁대상국보다 엄격하다는 이유로 수입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거나 또는 강화시킨다는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그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경제이론인 핵서-오린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sup>25)</sup>과 환경규제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로 귀결된다.<sup>26)</sup>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다자간 환경규제가 본

---

2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Michael E. Porter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pp. 1-896; Michael E. Porter and Claas van der Linde (1995),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petitiveness Relationship,"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9, No. 4, pp. 97-118; Paul West and Paul Senez (1992),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NAFTA: The Mexican Environmental Regulation Position*, Report prepared for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and Trade, pp. 69-70. 참조.

25)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을 한국 내 연구들 중에는 '환경오염회피가설'로 명명하기도 한다.

26) Valeria Costantini and Francesco Crespi (2007),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Export Dynamics of Energy Technologies," *Ecological Economics*, Vol. 66, No. 2-3, p. 447.

격화된 1995년 이전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고, 설득력 있는 환경규제변수의 개발과 모형의 구축이 어려워 동일한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도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만의 일방적인 환경규제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경제가 수출주도적 구조를 갖고 있어 환경규제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교역대상국의 환경을 이유로 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조치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패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환경규제의 유형

무역에 대한 환경규제조치의 유형은 제품이나 생산방식에 대한 직접규제,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직접규제에 의한 조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마크 및 인증제도를 통한 규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규제는 제품자체의 특성에 부과되는 환경규제이다. 예를 들면, 무게, 크기, 내용물 또는 생물의 종 그리고 재활용도, 폐기물유발도 등 제품 자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품의 소비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 및 환경 위험을 감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이다. 즉 공정 및 생산방식이 아닌 최종 제품의 소비 및 폐기단계에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제품을 규제하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제품에 대한 규제는 환경규제가 미약한 국가에 대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28)</sup>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대한 규제는 제품의 생산단계, 즉 시장출시 전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제조·수

27) 성봉석, 『무역과 환경』, 대전: 대경, 2004, p.26.

28) 김기홍·강만옥·강상인·한기주·이해춘, 『무역과 환경』, 과주: 집문당, 2005, p.428.

확 혹은 채집방식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오염물질 배출기준, 특정 생산방식의 사용에 관한요건, 자연자원의 수확 및 가공방식에 관한 요건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요건은 수출입시 통관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아 그 확인을 원산지에서의 인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는 제품관련 PPMs(product-related PPMSS)와 제품무관련 PPMs(non-product-related PPMs)로 구분된다. 제품관련 PPMs는 최종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생산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요건이고, 제품무관련 PPMs는 최종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 및 생산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무관련 PPMs는 제품수입국이 아닌 생산국(수출국)내에서만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 제품무관련 PPMs 요건에 근거한 무역규제는 각국내 환경기준의 역외적용 및 경쟁력 문제와 직결된다.

환경마크란 어떤 제품이 동일범주 내의 여타 제품보다 환경친화적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로 강제기준이 아닌 소비자 선호라는 시장기구를 이용한 자발적인 환경정책수단이다. 환경마크는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규제와 유사한 제품의 생산·소비·폐기단계에 이르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의 일방적인 환경여건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환경마크는 개도국에 상당한 적응비용을 동반하는 시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국제무역의 경우 제품 또는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는 기술, 시간 및 비용상의 한계로 그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요건은 수출입시 통관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 확인을 원산지에서의 인증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성공여부는 인증에 대한 공신력의 유지에 달려 있다.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각국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이 국제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호인정하는 방법과 국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대표적인 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14000'이다.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부담을 주어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 또한 배출하는 물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오염저감 및 혁신에 대한 항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부담금 등의 요율이 낮거나 상황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경제적 수단은 환경세, 배출거래권, 부과금, 예치금 등이다.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생산과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시킨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설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분배한 후 인위적으로 배출권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배출부과금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 및 제조하는 과정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다. 정부가 설정해 놓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제도는 소비자 또는 생산자가 환경위해성이 크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해 일정금액을 관계기관에 예치시킨 후 오염물질을 회수 처리하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비용을 감소시켰을 경우 예치했던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현재 다자간 환경규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다자간 환경협약(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경제권 또는 개별 국가가 취하는 환경규제이다.<sup>29)</sup>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던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등이 다자간 환경협약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자간 환경협약을 요약하면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주요 국제환경협약

| 협약명                      | 발효연도       | 주요내용  | 해당산업 |
|--------------------------|------------|---|------|
| 비엔나협약<br>(몬트리올 의정서)      | 1988.09.22 | -CFC 등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 제한<br>-전기·전자, 반도체 등 CFC 물질<br>사용산업에 대한 규제 | 전 산업 |
| 바젤협약                     | 1992.05.05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   | 화학산업 |
| 스톡홀름협약<br>(POPs)         | 2004.05.05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 화학산업 |
| 사전통보승인 절차에<br>관한 협약(PIC) | 2004.02.24 | -엄격하게 제한된 화학물질(살충제, 다<br>이옥식, 퓨란 등 2차 오염물질) 규제                | 전 산업 |
| 기후변화협약<br>(교토 Protocol)  | 2005.02.16 |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규제<br>-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협약                           | 전 산업 |
| 도하개발아젠다<br>(WTO/DDA)     | 협상 중       | -환경과 무역규제의 연계   | 전 산업 |

자료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2010, p.7.

한편 개별 경제권이나 국가가 취하는 환경규제로는 다음 <표 2-2>와 같이 EU에서 취하고 있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그리고 일본의 가전리사이클법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최근 환경규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는 국가 간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29) 민혁기, “글로벌 환경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0, pp.42-44.

국가의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제재조치 역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즉, 개별 국가는 자국이 설정한 환경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부과나 수입금지 등의 제재수단을 통해 환경보호 뿐 아니라 운영에 따라서는 자국산업 보호라는 부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sup>30)</sup>

이러한 수월성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EU 내에서만 국한되어 논의되고 시행되었던 환경관련 규제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많은 국가로 확산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공화당정부 시절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화학물질관리계획(Chemical Action Plan, 2009), 납함유량 규제(2008), 온실가스배출량보고제(2009) 등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들을 신설하고 있다.

중국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2007)<sup>31)</sup>이나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조례(2009)<sup>32)</sup> 등의 환경규제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순환경제촉진법(2009)<sup>33)</sup>과 같은 법규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및 환경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

30) 이러한 환경규제는 수입품과 자국 생산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1) 《電子信息產品污染控制管理辦法》, 信息産業部第39号, 2007年3月1日.

32) 《폐기 가진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를 2008년 8월 20일의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2008년 8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 통과된다.

<표 2-2>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

| 국가 | 규제명                       | 발효   | 주요 내용                               | 대상품목     |
|----|---------------------------|------|-------------------------------------|----------|
| EU | ELV<br>(폐차처리지침)           | 2000 | 자동차폐차 시 생산자가 비용 부담 및 재활용 비율의 의무화    | 자동차 산업   |
|    | WEEE<br>(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 2005 |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 전기전자 산업  |
|    | EuP<br>(친환경설계의무지침)        | 2005 | 에코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에너지사용품목의 시장진입 금지     | 에너지 사용품목 |
|    | RoHS<br>(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 2006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함유금지      | 전기전자 산업  |
|    | REACH<br>(신화학물질관리제도)      | 2007 | 일정규모 이상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    | 전 산업     |
|    | 자동차온실가스배출규정               | 2012 | 2012년부터 신차 CO <sub>2</sub> 배출기준 의무화 | 자동차 산업   |
| 미국 | CAFE<br>(평균연비제도)          | 1979 | 자동차의 평균연비 규제                        | 자동차 산업   |
|    | 캘리포니아<br>폐전기전자제품활용법       | 2005 | 폐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요금 부과                 | 전자산업     |
| 중국 | 전자정보제품<br>오염관리법           | 2007 | 전자정보제품에 포함된 6대 오염 물질 허용함량 준수 여부     | 전자정보 산업  |
|    | 폐기전기전자제품의<br>회수처리관리 조례    | 2009 | 제품 판매, 수리 및 A/S업체는 폐기 제품의 회수정보 표시   | 전기전자 산업  |
|    | 순환경제촉진법                   | 2009 | 생산자 증 이해관계자간의 책임부분 명시               | 전기전자 산업  |
|    | 폐가전 및<br>전자제품회수처리<br>관리규칙 | 2011 | 전자제품의 에코디자인, 제품 정보회수 및 처리강제의무       | 전자산업     |
| 일본 | PC리사이클법                   | 2003 | PC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회수 및 분리처리 의무화         | 컴퓨터 산업   |
|    | 가전리사이클법                   | 2006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리사이클 의무화               | 전자산업     |
|    | J-MOSS<br>(특정화학물질 함유표기법)  | 2006 | 전기전자기기 특정 화학물질 표시방법                 | 전기전자 산업  |

자료 : 1.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p. 7.

2. 민혁기 (2010), p. 43.

### 3.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환경편익(environmental benefits)이란 환경자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인간사회에 제공하는 환경면에서의 이익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종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편익은 자유재(free goods) 혹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적어도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 이유는 이런 편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환경자원(environmental stock)이 양적·질적으로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환경파괴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이런 편익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 양적으로 고갈되었거나 질적으로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편익 자체가 일종의 희소재(scarcity goods)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자원이 요소가격, 요소집약도, 무역규모, 무역편향, 무역이익, 국민후생, 교역조건, 국민소득, 국제수지 및 투자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패턴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효율성의 견지에서 볼 때 공해를 집약적으로 발생시키는 부문(pollution-intensively producing sectors)은 그렇지 않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출량 단위당 대량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보이지 않은 보호(hidden protection)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은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의 왜곡적인 영향을 인정해 왔으며<sup>34)</sup> 이에 대하여 모든 사회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해결방법으로서 제도적인 조치(institutional arrangements)<sup>35)</sup>, 협상과 재산권 인정(bargaining and property right assignment)<sup>36)</sup>, 및 절차의 최적화<sup>37)</sup> 등을 제시해 왔다.

---

34) Arthur Cecil Pigou (1952), *The Economics of Welfare*, (St. Louis: Transaction Publishers), pp. 1-876; Ezra J. Mishan (1971), "The Post-War Literature on Externalities: An Interpretative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9, pp. 1-28.

35) Allen V. Kneese (1964), *The Economics of Regional Water Quality Management*,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pp. 1-215; Alvin K. Klevorick and Gerald H. Kramer (1973), "Social choice on Pollution Management: The Genossenschaft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 pp. 101-146.

36) Ronald H. Coase (1968),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pp. 1-44; John Harkness Dales (1968), *Pollution, Property and Prices: An Essay in Policy-making and Economic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1-120.

세계가 환경규제비용을 생산비용에 포함시키고 또한 제품기준을 설정하게 될 때, 국제무역의 수준과 패턴은 당연히 변동할 것으로 지나치게 기대한다거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장가격이 사회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왜곡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는바, 환경규제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현상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시정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은 일반적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와 부의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세계경제에 있어서 시장 기능의 실패(market function failure)의 한 현상으로 파악하여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불경제인 기업의 외부비용을 내부화시키고자 하는 각종의 환경규제조치를 실시하면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모르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제무역관계에 하나의 충격(shock)인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에 미칠 가능성 있는 충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7)</sup>

첫째, 단기경쟁효과(short-time competitive effect)의 발생이다. 환경규제는 생산비를 인상시키고 국내의 수출 및 수입 경쟁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역의 영향을 미치며, 비용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면 기업은 판매액의 감소 혹은 생산의 포기를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환경규제산업에서 비환경규제산업으로의 생산자원의 재분배를 야기하며 동시에 구조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둘째, 무역수지효과(balance-of-trade effect)의 발생이다. 환경규제비용은 교역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민일 국내의 환경규제로 인한 가격변화에 대해 수입품·수출품이 받는 영향이 탄력적이라면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어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37) Thomas H. Tietenberg (1973a), "Controlling Pollution by Price and Standards Systems: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Vol. 75, pp.193-203; Thomas H. Tietenberg (1973b), "Specific Taxes and the Control of Pollu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Vol. 87, pp.503-22; Karl-Göran Mäler (1974), *Environmental Economics: A Theoretical Inquiry*, (Baltimore: Resources for the Future), pp.1-276.

38) Ingo Walter (1975), *International Economics of Pollution*, (London: Macmillan), pp.50-54.

셋째, 비교우위효과(comparative advantage effect)의 발생이다. 환경규제가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무역구조를 변화시킨다. 교역이 되는 재화나 용역으로부터 환경파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원 이동은 국제경쟁상의 비교우위나 무역의 기본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나라의 환경자정능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요소이동효과(factor movement effect)의 발생이다. 만일 산업이나 기업이 환경규제로 인하여 경쟁상 불리하다면 환경자정능력이 크거나 환경의 질적 수준의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생산시설의 입지를 변경시킬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산업의 지역적 이동이 국내적으로 발생한다면 국제경쟁효과(산업구조의 변경)는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 입지변화가 있다면 무역흐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본 및 기타의 생산요소의 국제간이동을 야기한다.

다섯째, 국제경제정책효과(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ffect)의 발생이다. 환경규제의 국제적인 차이로 인해 무역정책이 달라진다. 즉 환경규제조치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 및 국제경쟁상의 손실이 보상할 목적으로 환경규제기준이 낮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과시키거나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통한 보호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압력이 다른 제한한다는 효과로 작용하기도 한다.

## 제4절 녹색무역장벽

### 1. 녹색무역장벽의 개념과 특징

#### 가. 녹색무역장벽의 개념

녹색무역장벽은 환경무역장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비관세 장벽 중 수입국(주로 선진국가를 가리킴)이 환경과 자연자원보호 그리고 인류와 동식물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입상품에 대해 입법으로 제정한 일련의 강제적 혹은 자발적 제한법규 혹은 전략 등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한 환경보호 표준과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상품이 품질 표준에 부합하며, 설계, 제조, 포장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며, 생태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녹색무역장벽은 보통 생태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인류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각종 표준이다. 이런 법규와 표준은 크게 생존형 표준 및 발전형 표준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인류의 기본적 생존생태정보와 관련된 환경표준이다. 목적은 인류의 기본적 생존 환경과 생존의 환경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생존 환경과 생존의 기초가 높이고 인류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표준이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를 더욱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녹색장벽의 의미에 근거하여 녹색장벽은 넓은 의미의 녹색장벽과 좁은 의미의 녹색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가 혹은 지역이 환경보호와 인류 및 동식물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국외 상품의 본국 수입을 막는 목적으로 제정한 여러 무역보호대책이다. 후자에서 언급하는 녹색무역장벽은 환경에 대한 무역장벽이다. 즉 한 국가나 지역이 생태환경 보호를 빌미로 국외 제품이 본국에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고 무역보호 목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제정한 비관세성 기술장벽을 가리킨다.<sup>39)</sup>

39) 김우청, “녹색무역장벽이 중국농산품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9.

## 나. 녹색무역장벽의 특징

녹색무역장벽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의 광범성이다. 20세기 1970년대 이래, 기술성 사회는 인류의 건강과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성조직과 회의를 통해 일련의 다변적 기술성협의를 제정하였다. 제품의 측면에서 볼 때, 녹색장벽은 인류의 건강과 관련된 초급 단계 제품 즉 식품과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부 완제품과 중간 제품도 관련된다. 또한 녹색장벽은 제품의 개발, 생산, 그리고 가공, 포장, 운송, 판매, 소비 등 제품의 생명주기 중의 모든 단계에 관련된다. 기술적 제한 대책이나 표준은 광범성이 아주 크다. 영향을 미치는 구역적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한 국가와 나아가 전 세계로 아주 빨리 확대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둘째, 내용의 차별성이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 수준이나 기술표준제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여러 선진국의 첨단기술 수준은 한 차원에 놓여있으며 선진적인 기술과 자금력으로 까다로운 환경표준을 제정한다. 심지어 부분적 독점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로 연명하여 상호 적용이 가능한 환경표준과 검사표준을 수립한다. 이런 선진국가와 지역간의 무역은 환경보호문제로 인한 분쟁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녹색장벽이 거의 없다. 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황은 이와 반대이다.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수준과 환경표준 적용 측면에서 선진국가보다 훨씬 낙후한다. 제품의 환경보호책임에 대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선진국이 제정한 기술과 환경표준 등은 외적으로는 공평하고 공정해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부단하게 업그레이드하여 첨단기술력을 밑받침으로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무역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보호수단의 은폐성이다. 녹색무역장벽은 보통 아주 강력한 은폐성을 가진다. 먼저, 이는 명의를 합법적이라고 묵인된다. 녹색무역장벽은 보통 인류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각종 무역법규와 기술성 공약의 제정과 실시과정에 드러난다. 이는 사람들의 악목을 흐려 모두들 자연스럽게 인류건강과 생태보호에 주목하도록 한다. 또한 녹색무역장벽은 쿼터, 허



가증관리대책과 비교해서, 분배 측면의 차별성을 확실히 피하였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지 않다. 또,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은 표준으로 엄격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검사수속도 빈번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각종 표준은 시시때때로 변동한다. 이는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점이다.

넷째, 영향의 이중성이다. 녹색무역장벽은 하나의 “쌍날검”이다. 이는 생태 환경보호, 인류와 동식물 안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불합리한 제한 역할도 있다. 첫째, 녹색장벽의 출현으로 기술성무역 활동과정중의 일부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실상 세계의 환경을 보장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선진국은 녹색무역장벽의 악의적인 추진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성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자기들의 시장 할당을 확대하였으며,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세계자원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예까지도 얻었다. 이런 녹색장벽은 무역보호주의자의 도구가 되었다.

다섯째, 형식의 합법성이다. WTO 협정문에서는 구성원 국가는 세계자원을 분류하고 경제성자의 목표에 근거하여 세계 환경문제를 고려하며, 우선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한다. 또한 항상 환경보호의 사명을 명심한다. 각 구성원 국가는 자연경제발전수준과 서로 부응하는 환경보호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GATT/WTO 관련 규칙에서 체결국가는 인류와 기타 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하에 세계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의 진귀한 자원을 절약을 절약하는 전제하에 무역제한과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다. 대부분 녹색장벽 전략은 본질적으로 또한 합리적이다. 기술성 공약과 다변무역협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한 합법성을 가진다. 실천관점에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보호의 녹색가치관을 점차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서 각국 소비자득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인류와 기타 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초한 무역대책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자연히 녹색장벽의 숨은 목적을 계속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sup>40)</sup>

---

40) 김우청, 前揭論文, pp.12-15.

## 2. 녹색무역방벽의 운용현황 분석

WTO의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받아 발표하는 TBT통보문 건수는 2004년 641건에서 2009년 1,49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또한 TBT통보문 중 녹색 관련(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문건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99건에서 2009년 269건으로 2.7배의 급증세를 보여 녹색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전 세계 녹색무역장벽의 운용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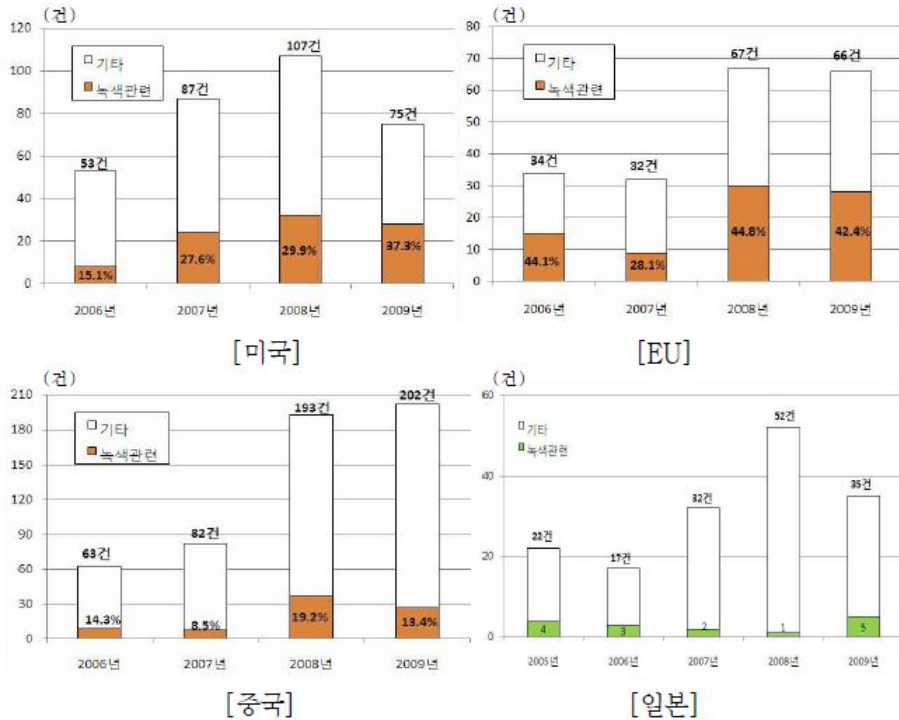
자료 : 장현숙,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 Focus」, Vol.9, No.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p.3.

국가별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는 매우 치밀한 도입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규제건수는 많지 않은 반면 녹색 관련 규제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비중은 2009년 전체 TBT통보문 중 80%에 이르고 있다.

각국은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관련 제품에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WTO에 따르면 2008년도에 미국, 중국, EU 등 24

개 회원국에서 68건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하였다. 이는 같은 해에 집계된 모든 기술규제 1,269건 중 5.4%에 해당한다. 2007년도의 1,043건 중 25건(2.4%)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4> 주요 국가별 녹색무역장벽의 운용 추세



자료 : 장현숙, 前掲論文, p.5.

국가별로 미국은 녹색 관련 TBT통보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미국의 기술규제 문건 중 녹색 관련 비중은 2006년 15%에서 2009년 37%로 증가하였다. 한편 미의회와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의 TBT 사례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녹색보호주의 및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U는 녹색 관련 TBT통보문 건수 및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아 42.4%에 달하며 세제·살충제 등 유해성물질의 유통 억제 및 규제, 에너지

라벨링 관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8년 이후 유해물질 사용 규제와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녹색 관련 TBT 통보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기술장벽이 높아지는 EU를 벤치마킹하여, 최근 TBT통보문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중 녹색 관련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점차 증가 추세이다. 전체 TBT통보문 중 녹색 관련 비중은 2008년 19.2%, 2009년 13.4%를 차지하여 미국과 EU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의 녹색 관련 TBT통보문이 각각 5건과 2건인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기술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관련 규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TBT통보문 총 35건 중 녹색 관련은 5건(환경보호 3건, 에너지절약 2건)으로 녹색 관련 TBT통보문 건수가 많지 않다. 일본의 TBT통보문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기술장벽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 차원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상거래 관습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장 비관세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 제1절 비관세무역규제의 對중국 집중 원인

#### 1. 외부적 원인

모든 비관세장벽은 까닭 없이 발생할 수 없고, 그 뒤에 숨은 경제와 정치적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TBT, 환경규제 및 녹색무역장벽이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집중되는 내부 및 외부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

#### 가. 국제환경변화

무역 자유화의 환경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노동 경쟁력 우위가 국제무역전쟁을 초래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점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자국무역의 보호수단을 찾아야만 했다. 인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친 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제 무역중 기술에 대한 제한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무역제한은 각국의 자국무역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만들게 해준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무역과 관련된 기술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일부분은 이미 TBT 등 비관세장벽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역장벽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된다.<sup>41)</sup>

#### 나. 선진국내의 자국 산업보호 압력 증가

첫째, 자유 무역화로 인한 선진국의 어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내려가고 이는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를 초래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선진국은 국내외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

41) 이가, “WTO 체제하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71-72

선진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되고, 수입에 타격을 입은 관련 산업은 정부보호의 조치를 받고 있다.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 내 자국의 제조업, 농업 등의 전통적인 산업 경쟁력은 날마다 쇠퇴하고 있다. 경쟁 체제에 있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은 끊임없이 중국에 기술성무역장벽의 도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둘째, 선진국 국내의 취업하는 압력의 증가한다. 중국 제품의 수입은 선진 국내의 제품에 대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당국 내기업의 이윤을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관련되고 있는 산업의 고용압력을 증대에 내려가게 하다. 이런 사업의 고용 인원수가 떨어지는 것이, 노동력의 이전은 한 방향의 요소로, 국외는 특히, 중국이 관련되고 있는 산업의 충격은 게다가 중요한 1개의 요소이다. 고용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부득이 중국의 수출 제품을 제한하고 본국의 해당된 업무의 생산 규모를 보증하여야 취업을 보증할 수 있다.

#### **다. 자의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WTO의 한계성**

국제 무역 조치는 분쟁의 해결 구조를 창립하지만, 그 효과는 유한하다. 국제 무역조치는 단지 요구하는 것이, 회원국은 그 법률, 규정을 개정해서 재결을 원하지 않으면 이 회원국의 무역 상대는 법률에 기초로 해서 그 다른 분야에서 그것에 대해서 복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강력한 제약하는 것에 부족 되어서 기술의 장벽을 제거하려 온다.

#### **라. 통일적인 국제 표준 설립의 어려움**

국제무역기관과 국제표준구조의 추진 배경하에서 각국은 모두 상호인증과 표준화의 수단을 통해서 기술 무역 장벽 문제를 해결해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국가별, 산업별 기술별 다양성과 각국이 구체적인 이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내부적 원인

### 가. 상대적 기술 수준의 차이

중국의 수출의 제품 구조가 단일하고, 제품의 기술 가치가 낮아서 수출 품질 수준은 훨씬 선진국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고, 어떤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과학 기술수준이 낙후하고 기업의 창조 능력이 부족하고 중국의 수출 제품이 장기에 방직, 경공업 농산품등 노동집약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기술과 고부가 가치의 제품의 비교는 낮고, 산업 구조의 발전속도가 미흡하다.

### 나. 기술 발전에 대한 표준과 기술규정의 적응력 부족

중국의 기술규정 및 관련 규정의 불완전하다. 현재 중국의 기술규정의 수는 적으나 조례, 규칙, 방법의 형식은 자주 나타나고, 입법의 단계는 비교적 낮다. 현재 중국의 관련 법률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 법」(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질량 법」(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계량 법」(1985년)이 그것이다.<sup>42)</sup>

중국에서 기술표준, 규정의 제정, 가감 장치는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상무부, 국가계획 위원회, 세관, 국가의 품질의 감독의 검사 등 각각의 규정의 사이는 협정성에 부족하고, 전면적인 기술의 규정의 체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투명성이 낮다. 중국은 2001년 12월11일에 WTO에 가입하고 국제 무역 조직 문의점을 설립한다. 중국 정부 WTO통보국과 수출입 공평 무역국은 중국 전체를 계획적으로 분배해서 WTO와 관계가 있는 사무에 책임을 진다. 또 권위의 설명과 해석을 하고, 이 전의 매우 오랜 시간 내, 중국의 정보의 공포와 검색은, 문제가 존재해서 거기에서 투명도를 비난되는 것이 낮다.

둘째, 기술표준과 검사 수단의 낙후하다. 우선 기술표준의 전체 수준이 낮고 통일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은 시행하는 기술표준의 종류가 많다. 국가 표준, 지방 표준, 전문 표준 및 기업 표준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혼란스

42) 李軒, “貿易技術壁壘問題與中國的對策研究”, 中國成都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 p.110.

럽다. 2001년까지 중국은 이미 있었던 19,744개 표준 중에서 국제표준이 8,621항 있고, 약 43.7%를 차지하고, 고 기술의 표준이 부족하다. 19세기 80년대 초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이 국제 표준의 이용률이 80%가 되었다.<sup>43)</sup> ISO, IEC의는 6159항 채용하고 그 중, 채용의가 1878항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ISO는 표준적으로 12404항 있어서, IEC은 표준적으로 5447항 된다. 이 계산에 근거하고, 중국은 실제로 ISO, IEC의 표준을 채용하는 것이 1/10만 차지하고, 개발도상국의 평균적 수준보다 낮다.<sup>44)</sup> 각각의 기업의 사이의 기술의 표준도 서로 통일하지 않고, 골고루 국가, 산업의 추천적인 표준보다 낮고, 언어의 의사표시도 혼란하다. 다음에 제정 능력의 부족하다. 국제 표준 구조 등의 다수의 기술위원회와 분 기술 위원회 중에서, 중국은 1개의 기술 위원회의 사무국과 5개만을 맡아서 기술 위원회의 일을 담당하다. 중국의 주도로 기초한 국제 표준은 현재 까지 10을 몇 항목(인증) 넘지 않고, 게다가 거의 필요한 표준이다. 그리고 표준의 개정은 시의적 절하지 않다.

중국은 표준을 제정하는 시간이 10년도 넘는 항목이 7000 있어서, 국외의 3~5년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장과 기술 발전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고 직접 중국의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상응하는 소프트·하드웨어가 부족하다. 중국은 인력, 기술, 설비 등의 방면에 국제 표준화 추세의 요구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국제에서 비교적 권위가 있는 검사의 기관도 부족하다.

셋째, 적합판정절차와 국제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인증 작업 중에서 중국에 분할 관리과 다변 인증을 실행해서 국내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불일치한 인증 제도를 취하고 있다. 어떤 인증 기구도 국외의 인증을 못받고 권위성도 없다. 검사 수단에서는 중국의 인원 기술 설비 등 분야에서 아직 큰 차이가 있고 국제적인 권위 기구도 모자란다. 중국의 업무협회, 검사, 인증등 기구의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대부분 정부 혹은 비정부로서 등록된 법인이 경영해도 업무 내부 기업의 조조도 하지 못하고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43) 周正祥·周建華, 「技術性貿易壁壘影響我國出口的原因分析」, 載「長沙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5年第9期, p.57.

44) 茹波·馬文超, 「我國應對國外技術性貿易壁壘的研究及對策建議」, 載「北方經貿」2005年第8期, p.51.



## 다. TBT에 대한 인식 부족

먼저 중국의 많은 수출업자들은 TBT에 대한 중시하지 않고,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의 보호, 품질 등을 중요시한다.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 및 다른 나라의 새로운 기술성 관리 조치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다. 예를 들면 온주에서 발생한 라이트사건에 대해 EU는 1998년에 이미 라이트에 대한 안전장치의 CR법안을 공포한다. EU안에 의견을 모집하고 중국에 통보했지만 근데 온주에 있는 라이트기업들은 2001년 10월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정부 및 해당 부서들은 동일한 작업시스템을 세우지 않고 기업가들에게 외국의 TBT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에 부족했다. 국제 통용의 국제표준과 상응한 관리규정도 몰랐다. 주요 무역 거래 국가의 기술 성장벽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출업자에게 거시적인 지도를 제공하지 못했고 완벽한 시스템이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 경쟁에서 우세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TBT의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은 거시적인 지도를 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협회가 기술 무역장벽의 특수 영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무역 장벽에 대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

## 라.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부적합

1986년에 중국이 정식적으로 그 당시의 GATT에 진입의 요구를 제의하기 부터는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 원인으로 인해 2001년12월11일까지 겨우 WTO에 들어가기 말았다. 이 기간에는 중국에 장기적으로 다변 무역의 체계밖에 있을 수 없다. WTO에 관련된 대우를 향유할 수 없어서 선진국들의 기술 무역 장벽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중국의 수출 무역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 한편은 WTO에 대한 TBT의 협정의 인식을 부족해서 WTO의 무역 분쟁 시스템으로 국외가 중국의 수출 제품에 대한 경시하고 불합리적인 TBT의 규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없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대우를 향유할 수 없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되어 TBT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부족하다. 기술규정, 기술표준과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국제 기술표준이나 선진국의 기술성요구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20년의 개혁 개방으로 대외 무역은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고, 저가의 제품은 수입국의 관련 산업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의 명분으로 엄격하고 완벽한 기술규정, 기술표준과 적합판정절차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자국무역 보호를 위해 TBT로써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TBT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제품과 기술의 혁신, 기술의 표준화, 기술규정 규정 제정을 촉진시켜주며 국민의 환경보호의식을 높여주고 환경보호 제품에 대한 수출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TBT가 미치는 소극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중국무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 1. 강제적 기술규정 및 표준의 실시에 따른 영향

선진국이 중국 제품에 취하는 TBT의 주요방식은 표준을 높이고 표준규정을 엄격하게 하며 검사항목과 기술규정을 늘이는 것이다. 몇몇 나라들이 중국 제품에 대해 특별히 높은 표준을 설립해서 중국의 수출무역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을 예를 들면 중국의 대부분의 농산물(과일, 야채)은 농약 잔류량에 불합격하여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2001년 초 일본이 중국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강화했고 그에 대한 검사 결과를 자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통지함으로써 한때 일본 국민들이 중국 농산물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2005년 11월의 공포는 중국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 시켰다. 2006년 5월 29일에 새로 규정된 중국 농산품에 대한 「식품중 화학물 잔류 비율 검사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했다. 이 규정은 일본에 수출할 중국 농산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강소, 산둥, 광둥, 절강 등 여러 지역에서 손실을 입었다.<sup>45)</sup>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 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직접적인 손실과 함께 생산원가 확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기술장벽은 위한화 절상과 보호무역과 함께 중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3대 요소로 꼽히고 있다.<sup>46)</sup>

WTO가입 이후 중국 상품의 수출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는 감소되었으나 기술장벽이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국외 기술성 무역조치가 중국기업에게 조성한 수출 무역 기회 손해는 1천470억 달러에 달하고 대략 2005년 연간 수출액의 19.29%를 차지하며 15.13%의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졌다.<sup>47)</sup> 22대 분류의 수출 제품 중 18종류의 제품의 국외에서 기술성무역조치를 실시하여 직접적으로 손실을 봤고 직접적

45) 李軒, "貿易技術壁壘問題與中國的對策研究", 中國成都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 pp.106-108.

46) 장해동, 『기술무역장벽 및 중국 산업의 안전』, 상해재경대학출판사, 2006.

47) 중국상무부, "2005년 국외 기술성무역조치가 중국 대외무역에 주는 영향조사보고", 2005, p.12.

손해의 금액이 69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5년 연간 수출액의 9.07%를 차지했다 기업이 국외 기술성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된 제조원가가 217억 달러이고 대략 2005년 전국 수출 무역액의 2.85%를 차지한다.

또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개인적 소송의 확대 해석과 중국 상품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2006년 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 무역에 대한 직접손실을 359.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과 표준 등의 기술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제한은 노린 유럽연합, 미국, 일본, 러시아, 동남 아시아국가 연합의 무역기술장벽 조치로 2,500여개의 중국의 수출업체 중 31.4%가 경제적 손실을 받았다. 기술장벽 관련 손실은 2006년 중국 수출액의 3.71%에 달하는 액수다. 수출업체가 입은 직접적인 손실액은 동기 대비 9.7%증가한 758억 달러에 달했으며, 외국의 기술 관련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늘어난 기업의 생산비용은 동기 대비 21% 증가한 26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환경기술표준 요구 부합에 따른 영향

중국내 어떤 기업의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환경, 위생, 안전기술표준에 대한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목표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1998년9월11일 미국농업부가 이러한 법령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모든 목재와 목재포장 제품은 반드시 열처리 또는 훈증처리 되어야 하며 방부제 처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혹은 수출업체가 반드시 무 목재포장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중국은 약 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EU도 중국 제품 중 목재와 목재포장에 대한 새로운 검사표준을 정했다. EU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중국은 7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었다.

### 3. 수입국의 불합리적인 규정 혹은 표준에 따른 영향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술표준을 제정해서 타국의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쌀은 일본 규정에 있는 56개의 검사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90% 이상이 위생과 관련된 검사조치항목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위생관련 검사 항목은 9개 정도이다.) 또한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금류에 대한 위생표준요구가 국제위생표준보다 500배 높다. 많은 중국제품이 선진국의 심한 위생 검사조치 때문에 수출거부를 당했다. 이로인해 큰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 제3절 중국무역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 1. 중국산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TBT는 제품의 시장진출을 제한하지 않지만 수출국이 제품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비, 인력의 투입과 비싼 검사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EU가 1999년 6월 1일 공포했던 결의는 15개 가입국에 긴급조치의 실시를 요구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모든 목재포장에 대한 새로운 검사표준을 설정했다. 목재포장에 있어 나무껍질이 포함되면 안 되고 열처리해야 하며 목재의 함유량 20%로 제한 한다. 이런 조치들은 수출제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중국 제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sup>48)</sup>

또한 중국 국내의 검사부처와 각 기업의 검사설비 수준과 방법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검사설비 구입에 투자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전체적인 수출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식약품관리국(FDA)은 대부분의 식품에 반드시 14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요구한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미국에 매년 10.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제품이 유럽이나미국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혹은 국제적 인증서(ISO 9000, ISO 14000인증, 유럽의 CE인증, 미국의 UL, MIL인증표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수출비용을 증가시켜 시장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또한 TBT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제품을 막게 되고 국내시장의 공급불균형을 초래한다. 현재 중국 제품의 경쟁력은 브랜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는 가지지 못한 국내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TBT의 추세에 따라 중국의 생산업자들이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표준규정대로 제품을 만든다. 이러한 표준규정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를 구입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제품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해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48) 張慶玲, "技術性貿易壁壘對中國對外貿易的影響及其對策", 2006年度同等學力申請碩士學位論文, pp.33-34.

한편으로 환경, 노동과 관련한 새로운 TBT조치에 의한 제품 비용을 증가시킨다. 중국의 수출 제품 중 상당수가 전통 포장재료 때문에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천연재료로 생산한 포장 물에 대한 위생검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게다가 어떤 제품은 목재나 벗짚 등으로 포장이 되는데 친환경적인 재료로의 포장이라기보다는 질이 낮은 포장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 더러 포장재료에 유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수입국들은 이에 대한 TBT를 설립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수입국들의 TBT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기술의 개발과 친환경적인 제품 포장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 개선에 사용되어질 비용은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수입국의 무역장벽을 통한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제재는 중국에 있어 간접적으로 큰 경제손실을 가져온다. 중국이 매년 TBT의 영향을 받아 수출에 제재 당하는 비율이 수출총액의 25%를 넘어섰다. 약 460~50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 2. 고용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의 심화

중국 내 각 지역의 비관세장벽 인한 수출 손실의 정도는 각각 다르다. 수출품에 대한 TBT의 제한으로 어떤 기업들은 도산하고 그 기업의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실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U가 1999년 3세이하 아동에게 사용되는 완구나 아동용품에 벤젠이나 에스테르(ester) 등의 화학재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한일이 있다. 이런 화학물질이 포함될 경우 판매는 물론이고 수출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완구수출에 있어 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는 150만의 중국실직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산 완구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자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완구 제조업체의 타격이 심해 2010년 전체의 52.7%인 3,631개의 완구업체가 문을 닫았다.

### 3. 수출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경쟁 심화

TBT, 환경규제 및 녹색무역장벽은 간접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제품 시장점유율을 하락시킨다. 국외에 더욱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TBT앞에 중국 일부분 수출제품의 시장시장 점유율은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수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생겼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입쌀에 대한 검사지표가 1993년도 47개의 항목에서 현재 116개의 항목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내 무석 지역의 쌀은 80년대부터 매년 10만 톤의 하락폭을 보이며 현재는 수출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녹색무역장벽의 한계 때문에 국회고 수출되지 못한 대량의 농산물이 부득이 중국내에서 판매되게 되었다. 수출농산물의 국내 소비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 동일 제품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다. 한편 일반 농산물의 중국내 판매가격이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모두 낮다. 이로 인해 설사 순조롭게 판매했다 해도 그 이윤이 생산 가공 중에 투입된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발생하는 직간접 손실총액이 무려 백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

특히 2006년이래로 일본, 유럽연합 등 나라들의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의 실시는 중국산물수입에 다시한번 두터운 장벽을 형성하게 되었다. 수입국의 제품 환경보호 및 안전성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수출 전에 반드시 먼저 제품에 대한 고표준의 엄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선진국이 규정한 지표를 만족시키고 심지어 초과하기 위해 힘쓰다보면 별도의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설비를 들여와야 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 중에 다시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비용은 아마 제품생산 과정자체에 투입되는 비용을 초과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동업종과의 기업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 제4장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 제1절 총체적 대응방안

국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 무역장벽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의 무역 보호 수단은 융통적, 은폐적, 차별적, 목적적 특성이 있어 국제무역장벽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빈번히 중국의 수출에 전동을 걸고 있는 상화에 개도국들까지 무역장벽을 쌓고 있으므로 중국정부와 기업들은 하루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근원을 찾고 WTO규칙을 충분히 운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무역장벽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국가의 권익과 경제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소극영향을 감소하거나 해소하여 한다.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중국의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정확한 무역장벽의 인식과 적극적 대처

현재 기술장벽, 환경장벽, 녹색장벽 등의 비관세무역장벽은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시 여러 가지 무역마찰에 휘말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 경제와 무역은 최고조로 무역장벽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무역장벽과 WTO가입과는 필연적 인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 수출품이 확실히 덤핑, 대량수출로 인한 태국 시장의 충격, 위조품, 기술과 환경보호 표준에 미달 등 현상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국제무역장벽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부, 특히 대외무역 주관부문이 중국과 국외 간 무역장벽으로 야기하는 무역마찰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국가 간 무역협상과 무역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대외 교섭력을 더 많은 국가가 중국을 이해하고 중 시장경제 지위로 승인하게 하여 중국 기업에게 공정의 국제 환경을 마련하고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정당 권익을 보호 하여야 한다.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필요에 맞고 WTO규칙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대외경제 법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은 WTO의 요구와 약속에 근거하고 국가 정세를 결합, 관련에 부합하고 통일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WTO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전제 하에 WTO규칙과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률, 법규, 규정을 수정한다. 한편, 보호성 입법을 적당히 적시에 강화하고, WTO가입의 약속에 따라 관력 무역정책을 조정하여야 한다.

중국정부는 공정 무역작업을 강화하고 국제관례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수출 환경을 창조하고 국내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안전을 유지하는 등 방면에서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한다. 국외의 무역 구제시스템 경험을 귀감삼아 국제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신속 반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성 무역장벽, 환경장벽, 녹색무역장벽과 관련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로 하여 기업, 업계협회, 상회가 주체가 되는 국제무역장벽 대응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장벽을 대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제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외 무역환경과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의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무역장벽조사제도는 중국의 무역정책의 한 방형으로, 향후 중국이 대외 교역에 있어 적극적인 방어를 통한 무역이익 보호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즉,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외국의 무역장벽에 제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해결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외무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의 정부교환 등을 통해 무역기업의 애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벗어나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2. 국제무역마찰에 적극적 대응

국제 규칙과 관례에 따라 생산, 품질제어,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회계, 관리, 수출입, 투자 등 제도를 구축하고 자기 보호 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출현한 무역마찰에 대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기업은 WTO의 관력 규칙과 중국의 법률을 충분히 운용하여야 적극적으로 응소하여야 한다. 국외 기술성 무역장벽, 환경장벽, 반덤핑,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하여 응수를 하지 않는 것은 변론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이미 개척한 시장을 잃을 것이나, 응소를 하면 희망이 있거나 승리를 할 수도 있다. 반덤핑 응소의 승리여부를 유지하는 것이 표준이어야 한다. 적극적 응소는 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다소 억제할 수 있다.

기업은 시장경제 지위를 적극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현재 비 시장경제 지위와 대체국은 중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 반덤핑 응소 과정에서 승리하는데 최대의 장애이다. 중국WTO 가입 협상 중에 일주 국가가 중국을 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였으나, 기업이 자신의 시장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 가격은 정상 가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치에 맞게 논쟁을 하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여 무역장벽으로 야기하는 무역마찰을 감소하고 해소할 수 있다.

기업의 국제 시장개척은 단순한 저가 경쟁의 전략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하면서 품질전략을 실시하여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과 서비스로 국제 시장을 점령하여야 한다. 맹목적이고 타인 추종적인 전략을 전환하여 주도면밀한 국제 시장조사를 하여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발굴하며 수출품 구조를 조정하고 차별화 전략을 실시하여 국외 고객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히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무역 전략을 전화하여 수출과 대외직접투자가 결합된 방식, 기술무역, 서비스무역 등 방식을 모색해 더 큰 역역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국제 시장 경쟁에 참여하여야 한다. 노브랜드 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로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전환하여 관학기술 전략을 실시하고 지적 재산을 가진 브랜드를 발육하여 브랜드로써 시장 공간과 이윤 공간을 획득하여야 하고 국제화 인재를 육성하고 국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야 한다.

### 3. 국제협력 및 현지생산 확대

기업은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외자와 선진기술을 유치하고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 국제 생산 네트워크 체계에 융합하여야 한다. 이로써 산업 내 분업과 기업 내 분업을 심화하여 긴밀한 경제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국제무역장벽을 감소한다.<sup>49)</sup>

대외투자, 현지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국제무역장벽을 우회하는 것은 많은 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실시하는 중요 목표 중 하나이자, 무역마찰을 회피하는 중요경로이다. 어느 정도 국제 경쟁 우위를 갖춘 중국기업은 국내시장 개척의 기초위에 관감하게 해외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경쟁, 국제 분업, 국제 협력에 참여하여 국제화 경영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

49) 魯丹萍, 『國際貿易壁壘戰略研究』, 北京:人民出版社 2006, p.142.

## 제2절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방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 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직접적인 손실과 함께 생산원가 확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기술장벽은 위안화 절상과 보호무역과 절상과 보호무역과 함께 중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3대 요소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이 점점 더 심해지는 TBT에 대해 중국은 응당히 정부, 기업, 산업협회 3방면으로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 가. 지속적인 발전전략 제정

중국 정부는 신속히 기술성 무역 장벽에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등을 제정해야 하고, 광범위한 선진을 하고, 국제 품질 인증의 표준과 선진국이 선진적인 품질의 관리 방법을 널리 전파한다. 생산 기업이 국제표준의 기초를 장악하고 생산을 준비시켜서, 제품을 수입국의 요구에 맞게 한다. 이것이 수출 무역을 확대하는 것하고 대외 무역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준다. 내부의 협정 기제를 보완시키고, 국내의 관련부문이 통일적인 협정기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시키고 각 부문의 능동성을 동원시키고 과학을 통한 무역의 번창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한 발전방향으로 가야 한다.

#### 나. TBT 조기경보체제 설립

2005년 1월에 중국 과학 기술부는 국가의 중대한 과학 기술 프로젝트“중요한 기술의 표준 연구”에서 전문적으로 “기술 무역 조치의 전략과 조기 경보의 공사 방안”의 프로젝트를 마련한다고 선언했다. “3단계로 나누어 중국 기술 무역의 장벽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1~2년 내 중점 산업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창립하고 급한 응답을 실현하고 3~5년 내 중점 산업 기준의 수준을 높이고, 수동을 주동으로 전환시키고 5~8년 내 시장 경제와 중국 표준을 적용하고 전환시키고 5~8년 내 시장 경제와 중국 표준을 적용하는 전략을 만든다.<sup>50)</sup>

## 다. 국제기술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규정 설립

중국은 현재 기술 규정은 아직 정립되지 못했고, 여전히 강제성 표준으로 기술규정을 대신하고, 이것과 국제 관습과 특히, TBT협정은 일치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통행 원칙의 기초 위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해서 기술규정과 경제 규장의 관계에 밸런스를 되찾고, 기술의 규정과 기술표준의 관계에 밸런스를 되찾아야 된다. 또한, 중국이 초보적인 품질 인증 체계를 세우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 아직 통일한 인증 체계를 구성되지 못하다.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효율이 낮고 심지어 중복한 인증도 있다. 국제 인증 기구와 상호한 인식이 상호한 인식이 아주 유한하다.

정부는 국제무역 중에 있는 품질보증제체인증, 산품인증, 실험실허가 등을 촉진해야 하고 국제와 연결하는 기술법규, 표준체제, 통일하고 규범 산품인증체제를 설치해야 한다. 공익형 연구소 개혁의 본격화 및 연구기과 혁신실적 종합평가지표시스템과 평가방법 제정해야 한다. 관리방법 혁신, 과학기술 프로그램, 정책법규, 평가감독 등 관리수단의 종합적인 직능을 발휘하여 국제와 연결하는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고 통일한 인증체제를 설치해야 하며 WTO요구에 의하여 통일한 인증목차, 통일한 표준, 기술법규 및 적합성평가, 통일한 인증마크 등의 체제를 촉진해야 한다.

## 라. TBT 협정의 적극적인 활용

TBT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특혜의 대우를 제정하고 개발도상국에 체제의 배경, 자금, 무역 등 분야에서 도와준다. 그러므로 TBT협정에 대한 연구를 중시해야 한다. 이 서류를 통해 중국 제품이 TBT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선진국들이 중국 제품에 이중 표준을 통해 중국 수출 무역을 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동시에 이 협정은 선진국들이 마땅히 규정, 표준, 인증, 검사제도 등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게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비경시의 원칙 및 무역분쟁의 해결 기구를 배우는 동시에 특히 TBT협정에

---

50) 魏建良·謝陽群, "技術性貿易壁壘及其預警機制研究", 科學管理研究 2006. p.66.

서 ‘예외 조례’를 중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본국의 민족, 인문, 자원, 기후 등 개발도상국의 특징에 의거하여 예외 조례를 이용해서 TBT협정 원칙에서 민족 산업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게 한다.

#### 마. 지적 재산권 보호

최근 선진국들이 TBT와 지식 소유권을 융합시키고 기술, 특허하고 지이 표지 등 지식소유권을 이용해서 더 복잡한 TBT를 세우는 것이 이미 새로운 발전추세가 된다. 그래서 중국이 마땅히 지식소유권의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완전한 지식소유권 법률 체계를 창립하고 꼼꼼이 지식소유권 문제를 연구한다. 지식 소유 권력을 증가시키고 지식소유권의 사회관리를 높여 시킨다. 완전한 문의서비스 시스템을 건립해서 지식 소유권의 이용 수준을 높여서 자적인 지식 소유권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한다.<sup>51)</sup>

#### 바. 다양한 무역정보 수집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설치하는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현황을 잘 조사해야 하고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인식을 환산해야 된다. 주요 교역국 및 산업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해당된 국가가 TBT를 취하지 않아도 중국 기업이 최대한대로 손실을 줄이게 한다.

기술장벽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받은 농산품과 식품방면에는 중국은 주로 EU, 미국, 일본등 주요 무역대상국의 관련된 기술법규를 연구해야 한다.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세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정보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구축해야 산품을 맹목적으로 수출하는 비율을 감소할 수 있고 수입국과의 무역마찰도 피할 수 있다.

#### 사. 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선

중국에 많은 기술표준을 거의 다 정부 기구와 대당된 품질 부문으로 제정했고 업자협회, 품질 인증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하면

---

51) 이가, 前揭論文, pp.77-86.

정부 기능이 극단적인 것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구가 부풀어 오르고, 압력은 지나치게 크고, 기술규정과 기술표준의 제정이 제대로 못하고 기술수준의 발전을 따라서 제시에 갱신할 수 없고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 그래서 산업 협회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의 품질 표준을 제정할 때 각 산업 협회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서 국내와 지방의 산업 표준이 국제 일반 표준에 통합하게 촉구한다. 중국에 각 급의 업자 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된다. 국제 표준을 실시하는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국제의 표준 계획을 실행한다.

업무 증개 조직은 정보의 지지, 기업의 조직 등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무역 장벽을 대응하다. 업자협회 등 중개소처럼 조직에서 '기업을 위한 복무'란 이념을 세워야 된다. 적극적으로 기업이 기술 무역장벽을 극복하게 된다.

최근 중국은 무역 장벽에 대해 복수능력이 아직 약하다. 산업 협회와 기업 간의 협정이 약해서 소송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업자협회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기업 대표로 정부에 무역 복수에 관련된 의견과 요구를 제외해야 한다. 정부를 협정해서 합리하고 유효한 무역 복수 조치를 취하고 국내 기업의 이점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줄여들어야 한다.

요컨대 중국은 점차 정부 기구를 세우고 행정 지도하고 거시 조정으로 영업 협회는 표준을 제정하고 적용을 위조하는 분리되는 기술 무역 장벽시스템을 세우고 있다. 기술 조항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와 수입국의 정부가 교섭하는 외에 기업 상회와 업자 협회도 스스로 수입국에 관련된 조직과 대화할 수 있다. 수입국이 더 중국의 현상과 스스로 수입국에 관련된 조직과 대화할 수 있다. 수입국이 더 중국의 현상과 어려움을 잘 알게 된다. 수출 기업도 제시에 정부와 해당된 상회에 직면하는 문제를 반응하여야 한다. 업자 협회가 기업과 손을 잡고 수입국의 무단 요구를 극복할 수가 있다.<sup>52)</sup>

---

52) 이가, 前揭論文, pp.87-92.



##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 가. 관심과 인식의 제고

중국의 많은 제품들이 자주 TBT 규제를 당하는 것이 국제 시장의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기업에 대해 현재 가장 급한 의무는 시장 경제 체계의 이해와 학습을 가속화해야 하고 국제 규칙의 파악을 가속화한다. 기업 지도자와 기업 관리자들이 먼저 배워야 되고 WTO의 직능, 기본원칙, 상관한 협정 등 기본 지식을 파악하고 WTO에 관리되 규칙을 위해서 WTO규칙을 구사해서 기초를 다진다. 동시에 이런 규칙을 준수해야 되고 규칙을 잘 모르는 바람에 초래된 필요 없는 무역 마찰, 분쟁, 손질을 방지하고 WTO원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점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나. 국제표준과 품질 인증제도 활용

해외규격 인증은 자국 내의 상품진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은 마땅히 표준화 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합리적인 국제 표준을 채용하고 엄격히 시행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와 창조 조건하에서 기업은 마땅히 자주적으로 기발한 제품 표준을 제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인증 작업을 가속화하고 제품의 품질하고 기술의 제고를 이끌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무역 장벽을 극복한다. 기업은 ISO 등에 관련된 국제 표준의 인증을 강력하게 널리 시행하고 더 깊이 기업 인증의 피복을 확대해서 그 제품이 국제 시장에 들어가는 것에 도움을 준다.

ISO9000, ISO14000등 관리 표준과 기업의 실제 상황을 합쳐서 자신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창립하고 제도위에서 제품의 품질하고 환경 보호를 보증해서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경쟁 위치에 처해 시킨다.

OHSAS18000작업 건강하고 안전 체계 인증을 통해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신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고 사람이 기본을 삼고 도덕과 신용을 신경을 쓴다는 것을 표명한다. 모든 이런 인증들이 다 기업 품질의 인증이고 기업에 기회와 이윤을 초래할 수 있다.

## 다. TBT 방지체계를 구축

TBT 통보문에 대해서 기업들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기술장벽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우선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시스템에 관한 각종 해외 자료수집과 신개발제품에 대한 시험규격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분석하는 등 시장의 기술정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이 기술장벽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기본요건은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규류를 참여해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과 국제무역 자리 구조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장 전략을 실행한다. 수출 제품 구조를 개선하고 중국 수출 제품의 약질화를 바꾸고 다양한 시장 전략을 실시한다. 현재 중국이 EDI과 전자 무역 등을 이용하고 새로운 TBT를 건립하고 적극적으로 중국의 전자무역 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당된 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의 경쟁 행위와 산업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다.<sup>53)</sup>

## 라.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기업에 대해 제품의 과학 기술의 함량을 제고하는 것은 돌파하는 경로이다. 기업이 기술 개조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에 향해 과학 부분, 품질 강독부분과 손잡아서 과학 기술의 창조를 중시하고 자신의 핵심을 개발하고 국제 최신 기술 추세를 추구하고 이미 떨어진 기술과 설비를 포기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창조해서 국제브랜드를 세우고 품질, 가격, 이윤의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무역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 마. 대외 직접투자 확대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술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방식을 취하고 해외경영을 진행한다. 합자, 독자, 인수, 투다 등 수단을 통해 중국 기업의 국제화 경영 규모를 발전해서 관련된 산업을 기술무역장벽에 피

---

53) 蔣新梅, "技術性貿易壁壘與我國外貿企業的對應措施", 理論探索 2005. p.69.

하는 것을 이끌 수 있다. 이런 기술, 생산 표준, 및 브랜드하고 판매 경로가 유효히 기술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다. 기업은 독자, 합자 생산 기업의 형식을 개업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연구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재도 이용할 수 있고 국제 소비 추세를 따라 자금 원료 다 이용할 수 있다. 운송비용 등 다른 비용을 줄이다.<sup>54)</sup>

#### 바. 구제 조치의 활용

2002년 9월 23일, 국내 구제 방면에서 대외무역 경제 협력부에 [대외무역 장벽 조사 임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실시했다. 중국 수출 기업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빌어서 조사하고 증거를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 무역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어서 조사하고 증거를 찾다. 필요할 때 대외 경제부에 신청해서 수입회원국의 무역 장벽에 조사할 수 있다.<sup>55)</sup> 국제 구제에서 중국 수출 기업이 정부에 신청하고 수입 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그 정부에 신청해서 상담할 수 있다. 필요할 때 국제 무역 조직하여 분쟁의 해결 절차를 이용해서 수입국이 설립한 경사성 기술 무역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

---

54) 白大范, “技術性貿易壁壘現狀及對策分析”, 吉林大學法學碩士論文, 2006. p.35.

55) 劉晶利, “技術貿易壁壘及我國的對應策略”, 2006. p.37.

## 제3절 환경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환경규제 준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수축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지정된 유해물질을 포함한 소재 및 부품을 대체하거나 폐기물을 회수하는 등 환경규제의 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이 다중의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적격경쟁력을 낮추게 된다.

둘째로 규제국이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반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경우 중국기업의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 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 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중국 제품이 외국의 환경장벽을 넘기 위해 중국의 경제건설을 제약하고 있는 중대 병목문제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절약, 오염방출감소, 기후변화에 도움이 주는 과학 기술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소모량과 오염물 방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전력, 철강 등의 산업폐기물종합이용 사업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등의 핵심기술을 발전시켜서 저탄소경제를 발전한다.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및 파급 견인 기능을 증강시켜 '2차 창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시설, 공공서비스, 정보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산업단지 및 생태공업 시범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 나. 환경법제의 강화

중국 환경법제에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폐기물오염 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환경오염 매체별 30개 법률, 38개 행정법규, 국무원이 제정 시행하는 165개 규범화 공문서 및 19개 전문 규정,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 84개 전문 규정이 있다.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면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 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 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중장기환경보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05년에 ‘제11차 국가 환경보호 5개년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다. 2010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이산화황, COD기준)의 10% 삭감을 목표로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 산업체 오염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환경관리 시책을 제 시하였다.

중국정부는 또한 에너지저감과 오염저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시책을 중점 관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11.5 계획에서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약 20% 저감, 산업 증가치 단위당 물 사용량 30%저감, 산업폐기물 종합 재활용률을 60%로 제고하는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의 ‘제12차 국가 환경보호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번 5개년계획은 중점을 2개, 전략을 4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중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공공 건강을 해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네 가지 전략은 깊게 총 배출량의 감소, 환경품질의 개선, 환경리스크의 방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의 보호이다.

##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 가. 환경장벽에 대한 의식 제고

중국 기업들 세계적인 환경규제 추세에 환경장벽을 통하여 환경보호 표준의 제고, 신기술의 보급, 상품구조의 개선, 산업의 승급 등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아직도 인식하지 않는다. 자원의 날로 감소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이념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드는 다양한 친환경 생산기술 및 친환경 상품을 개발하고 현실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 나. 국제 표준의 채택

기업은 표준과 인증 작업이 WTO 가입 후 자신의 생존, 발전에 대한 특수

한 의미를 인식하고 표준과 인증수단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업은 품질경영 시스템 ISO9000,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0,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OHSAS18000 등 표준을 실시하여 기업의 품질책임 위협을 한층 낮추고 환경 실적과 사회 이미지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증가하고 기업지명도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국제 시장에서 양호한 조건을 구출할 수 있다.<sup>56)</sup>

---

56) 레이레이,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86-90.

## 제4절 녹색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 1. 녹색산업 및 제품구조 조정

중국의 수출 무역이 녹색화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가 우위의 변화에 따른 산업과 상품 구조를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녹색산품을 개발하고 수출하기로 한다. 최근에는 환경보호기술 및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잠재력이 아주 큰 신흥 산업(녹색산업)이 우뚝 일어난다. 이런 환경 및 자원의 보호는 산업의 핵심으로서 녹색산업의 개발과 녹색시장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녹색산품이 미래 10년 내 세계의 주요 공업시장의 주도가 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고 효과가 있는 수단을 취하고 녹색 하이 테크놀로지 전략을 시행하면서 과학기술을 투자를 증가하고 창조적인 기술을 강화하고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고 제품의 기술함유량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녹색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로 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하이 테크놀로지 녹색제품에게 정책 도움이 준다. 우대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 경쟁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 좋다.

둘째, 전통적인 기술에 대신 환경보호 및 생태계의 균형에 좋은 녹색기술을 이용한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 녹색기술 연구 및 개발 기구의 창설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에서 선진한 녹색기술을 끌어들이 배우고 다시 창조하고 널리 보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2. 환경표지인증제도의 보완

중국의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중국 환경표지인증위원회의 성립한 날과같이 1994년 5월 17일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환경표지인증제도가 ISO14000계열의 환경관리 국제표준 및 환경표지 인증제도 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지금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ISO14000계열의 환경관리국제표준 및 환경표지인증제도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환경표지 중위 제품 생산 오염물질의 배출 표준, 제품 품질표준, 안전성의 표준 등이 ISO14000계열에 관련이 있는 표준과 통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까지 환경표지제품은 국제 통일한 표준이 없어서 환경표지의 쌍방, 다방 상호 승인을 통해서 중국 환경표지인증의 국제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는 기업의 제품을 국제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일원화된 법령체계하에서<sup>57)</sup>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각 독자적인 법률 또는 표준에 의거하여 신선농산물과 농식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무공해농산물(無公害農產品), 녹색식품(綠色食品) 그리고 유기식품(有機食品)이라는 세 가지 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무공해농산물’이라 함은 농약잔류,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 지표가 무공해농산물 표준에 부합되는 농축수산물을 지칭하며,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중국기준을<sup>58)</sup> 통과한 친환경농식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무공해농산물은 2010년 기준으로 제품총량은 2.76억톤으로 동종 상품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된 수량이다.

‘녹색식품’은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과 일절 사용을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되며<sup>59)</sup>,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된다. 2010년 기준 녹색식품 연간 판매액은 2,823억위안, 수출액은 23.1억달러 규모로 1997년 대

57) 친환경농업육성법(대한민국 법률 제10893호, 2011.7.21, 일부개정).

58) 중국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 2002.4.29).

59) 중국녹색식품표지관리방법(綠色食品標志管理辦法, 1993.1.11).



비 각각 21%, 30%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품구조면에서는 농림제품이 65.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 8.88%, 수산 4.70%, 식품 12.78%의 순이다.

중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녹색식품 브랜드 인지도는 이미 70%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 표지는 현재 홍콩, 일본, 미국, 러시아, 영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프랑스, 호주 등 4개 국가, 7개 기업의 22개 제품이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식품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검사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합성 농업투입제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공식품과 개념상 동일시된다. 중국에서 유기식품 인증의 근거가 되는 유기식품표준은<sup>60)</sup>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 준하며 국제적인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승인한 유기식품 인증기구는 2002년 중궈화샤(中錄華夏)유기식품인증중심(COFCC)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25개이다. 유기식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5,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생산 및 수출규모면에서 매년 30%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식품의 인증은 주로 농가와 연계된 규모화된 생산기지를 먼저 조성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국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전형식 측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시장지향 측면에서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 지향, 인증형식에서는 개별농장 인증이 아닌 다수의 농가가 연계된 생산기지 인증, 주요 의사결정자가 개별농가가 아닌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유통구조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슈퍼 등)이 영업전략 차원에서 전문 판매대를 직접 설치하거나, 생산기업이나 친환경농식

---

60) 중국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2005.1.1).

품 전문유통업체가 대형 유통업체내에서 판매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유통형태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 3. 녹색장벽 정보시스템 구축

선진국가의 녹색장벽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발전하도록 높아지고 복잡해지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 국제무역하면 녹색장벽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해서 무역협회의 역할이 잘 발휘해야 한다.

지금은 중국의 무역협회가 외국에서 설립하는 대사관, 무역기구, 매체 등 각종 수단을 통해서 유럽 연맹 각국의 업종 표준, 제품품질표준, 검사검증표준, 환경보호요구 등의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녹색장벽정보센터 및 시스템을 건립하고자 한다.

중국은 정보관리 및 기술교환을 중시하여 녹색장벽에 관련 정보를 연구하고 파악하고 예측한다. 신속히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문제의 공동기술연구를 강조하고 자문서비스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통해 기업에게 선진국가의 녹색장벽 발전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

검증검사기관은 새로운 나온 점증점사문제를 중시하고 지금은 효력이 발휘하고 있는 국제환경보호규정 및 국제공약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검염병 상황 조사 등 방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국제공약 및 다자간무역체제 환경규범을 이용하고, 새로운 해악이 되는 녹색장벽을 모르게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sup>61)</sup>

---

61) 王金南, 『綠色壁壘與國際貿易; 第二版』,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2002, pp.22-23.

## 제5장 결 론

WTO 가입이후, 중국의 관세장벽 및 전통적인 비관세장벽에 대한 표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 등을 핵심으로서 형성되는 신 국제무역장벽의 표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최대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역장벽의 내용과 주요특징 및 발전추세를 인식하는 것, 국제무역장벽이 중국 대외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거하는 것, 정확한 대책을 이용해서 국제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중국 대외 무역의 지속 발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무역환경에서 최대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에 대한 개념과 국제적 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대량의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제무역장벽의 현황 및 국제무역장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각종 무역장벽을 받은 피해국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는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성장벽, 환경장벽, 녹색장벽, 반덤핑 등 많이 차별적인 무역보호 수단을 취하고 있다. 이런 무역장벽으로 야기된 무역이익의 손실이 심화되었다.

제4장에서는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무역장벽으로 야기되는 중국의 현실적인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전략과 대응조치를 제시하였다. WTO규제와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정세에 근거하여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무역장벽에 대응하려면 제정하여야 하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 특히 대외무역 주관부문이 중국과 국외 간 무역장벽으로 야기되는 무역마찰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국가 간 무역협상과 무역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

되고 투명한 대외경제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무역질서를 정돈하고 공정한 수출입작업을 강화하고 무역장벽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무역장벽이 기술, 법률 및 행정관리 등 여러 가지 방면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종합적 경쟁력을 증대하고 무역장벽을 타파하기 위해서 장부는 주도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표준 및 기술 관련 규범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관련 국제 규범을 원용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장벽에 대응하면 기업들이 종합적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증대하고 상품의 기술표준을 높이고 환경관리, 직업안전관리를 증강해야 한다. 기업의 무역 일체화 경영을 피하는 중요한 경로다. 선진국들이 보급하고 있는 기술장벽, 환경장벽 및 녹색장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결하는 대신에 이것을 우리에게 유용하게 만들고 압력을 동력으로 전환하고 비동적인 대처를 주동적인 조정으로 변하고 대외무역의 발전과 과학발전과의 실행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대응방안을 통해 중국은 앞으로 국제무역장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자 및 약자 국제협상에서 중국기업이 겪는 국제무역장벽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2010.
- 김기홍·강만옥·강상인·한기주·이해춘, 『무역과 환경』, 파주: 집문당, 2005.
- 김우청, “녹색무역장벽이 중국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태운·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레이레이,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민혁기, “글로벌 환경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0.
- 성봉석, 『무역과 환경』, 대전: 대경, 2004.
- 이가, “WTO 체제하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민아, “TBT협정과 환경라벨링 제도; WTO 주요 회원국들의 환경라벨링 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장해동, 『기술무역장벽 및 중국 산업의 안전』, 상해재경대학출판사, 2006.
- 장현숙,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 Focus」, Vol.9, No.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 중국상무부, “2005년 국외 기술성무역조치가 중국 대외무역에 주는 영향조사 보고”, 2005.
- 한승권, “우리나라 비관세 장벽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WTO/DDA 비관세 장벽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魯丹萍, 『國際貿易壁壘戰略研究』, 北京:人民出版社 2006.
- 劉晶利, “技術貿易壁壘及我國的對應策略”, 2006.
- 李軒, “貿易技術壁壘問題與中國的對策研究”, 中國成都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

文.

- 白大范, “技術性貿易壁壘現狀及對策分析”, 吉林大學法學碩士論文, 2006.
- 茹波·馬文超, 「我國應對國外技術性貿易壁壘的研究及對策建議」, 載「北方經貿」2005年第8期.
- 王金南, 『綠色壁壘與國際貿易; 第二版』,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2002.
- 魏建良·謝陽群, “技術性貿易壁壘及其預警機制研究”, 科學管理研究 2006.
- 張慶玲, “技術性貿易壁壘對中國對外貿易的影響及其對策”, 2006年度同等學力申請碩士學位論文, 2006.
- 蔣新梅, “技術性貿易壁壘與我國外資企業的對應措施”, 理論探索 2005.
- 周正祥·周建華, 「技術性貿易壁壘影響我國出口的原因分析」, 載「長沙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5年第9期.
- Alan O. Sykes, *Product Standards for Internationally Integrated Goods Market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95.
- Allen V. Kneese, *The Economics of Regional Water Quality Management*,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4.
- Alvin K. Klevorick and Gerald H. Kramer, “Social choice on Pollution Management: The Genossenschaft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 1973.
-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s 66-70; Appellate Body Report, EC-Sardines para 176.
- Arthur Cecil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St. Louis: Transaction Publishers), 1952.
- Deardorff, A. V. and R. M. Stern., *Measurement of Nontariff Barriers*,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8.
- Ezra J. Mishan, “The Post-War Literature on Externalities: An Interpretative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9, 1971.
- Ingo Walter, *International Economics of Pollution*, (London: Macmillan), 1975.
- ISO/IEC Guide 2: General Terms and Their Definitions Concerning

-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1991.
- John Harkness Dales, *Pollution, Property and Prices: An Essay in Policy-making and Economic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8.
- Karl-Göran Mäler, *Environmental Economics: A Theoretical Inquiry*, (Baltimore: Resources for the Future), 1974.
- Koul, *Guide to the WTO and GATT: Economics, Law and Politic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Kuwahara, Hiroaki, "Report on the Progress of UNCTAD-Led NTMs Work on Classification, Collection and Quantification of NTMs." Paper Presented at the Research Workshop on Rising Non-Tariff Protectionism and Crisis Recovery, Macao, China, Dec, 2009.
- Michael E. Porter and Claas van der Linde,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petitiveness Relationship,"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9, No. 4, 1995.
-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0.
- Paul West and Paul Senez,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NAFTA: The Mexican Environmental Regulation Position*, Report prepared for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and Trade, 1992.
-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1968.
- Thomas H. Tietenberg, "Controlling Pollution by Price and Standards Systems: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Vol. 75, pp. 1973a
- Thomas H. Tietenberg, "Specific Taxes and the Control of Pollu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Vol. 87, 1973b.
- Valeria Costantini and Francesco Crespi,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Export Dynamics of Energy Technologies,” *Ecological Economics*, Vol. 66, No. 2-3, 2007.

Van den Bossche, p., “WTO Rule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aastricht Faculty of Law Working Paper, 2005/6.

Wolfrum, et al, *WTO - Technical Barriers and SPS Measure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vol. 3,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2007.